

● 제284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복지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1. 2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상 제출】

의안번호 239, 240

I. 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상
- 나. 제안일 : 2018. 10. 31.
- 다. 회부일 : 2018. 11. 05.

2.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최종 예산대비 19.4% 증액된 4조 517억 3천 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9년도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예산(안)	2018대비 증감	증감률 (%)
합 계	3,392,627,644	4,051,730,079	659,102,435	19.4%
일반회계	2,296,301,520	2,795,860,217	499,558,697	21.8%
200 세외수입	50,644,785	53,485,785	2,841,000	5.6%
210 경상적세외수입	13,504,593	13,851,142	346,549	2.6%
220 임시적세외수입	37,140,192	39,634,643	2,494,451	6.7%
300 지방교부세	170,000	270,000	100,000	58.8%
310 지방교부세	170,000	270,000	100,000	58.8%
500 보조금	2,232,895,350	2,728,786,931	495,891,581	22.2%
510 국고보조금등	2,232,895,350	2,728,786,931	495,891,581	22.2%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591,385	13,317,501	726,116	5.8%

예산과목 (장/관/항/목)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예산(안)	2018대비 증감	증감률 (%)
710 보전수입등	12,591,385	13,317,501	726,116	5.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96,326,124	1,255,869,862	159,543,738	14.6%
200 세외수입	526,400	2,621,059	2,094,659	397.9%
220 임시적세외수입	526,400	2,621,059	2,094,659	397.9%
500 보조금	544,153,084	625,578,448	81,425,364	15.0%
510 국고보조금등	544,153,084	625,578,448	81,425,364	15.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1,646,640	627,670,355	76,023,715	13.8%

나. 세출예산

- 복지본부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은 6조 6,447억 6천 3백원으로 2018년도 최종예산 5조 7,070억 4천 7백만원 대비 16.4% 증액된 수준임.

〈2019년도 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예산(안)	2018년대비 증감	증감률
계	5,707,046,793	6,644,763,013	937,716,220	16.4%
일반회계	4,598,190,231	5,370,138,709	771,948,478	16.8%
사업비	4,033,372,960	4,743,908,476	710,535,516	17.6%
행정운영경비	530,051	651,785	121,734	23.0%
재무활동비	564,287,220	625,578,448	61,291,228	10.9%
특별회계	1,108,856,562	1,274,624,304	165,767,742	14.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96,326,124	1,255,869,862	159,543,738	14.6%
사업비	1,096,268,184	1,255,769,722	159,501,538	14.5%
행정운영경비	57,940	100,140	42,200	72.4%
도시개발특별회계	12,530,438	18,754,442	6,224,004	49.7%

○ 2019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단위:천원,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복지본부	5,707,046,793	6,644,763,013	937,716,220	16.4%
복지정책과	197,675,475	234,380,428	36,704,953	18.6%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95,284,266	234,008,730	38,724,464	19.8%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50,542,451	69,490,667	18,948,216	37.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612,447	11,487,447	△125,000	-1.1%
가사 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665,750	2,202,000	536,250	32.2%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	143,120	143,120	신규
보훈단체 지원	2,128,100	2,578,100	450,000	21.1%
보훈대상자 등 지원	33,608,350	51,362,960	17,754,610	52.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	539,000	587,000	48,000	8.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988,804	1,130,040	141,236	14.3%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17,414,631	128,924,730	11,510,099	9.8%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217,916	3,566,708	348,792	10.8%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보강(시민참여)	-	120,000	120,000	신규(시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9,098,774	91,036,937	1,938,163	2.2%
홀몸 어르신행의 행복, 노래로 찾아오 '노마 합창단' 운영(시민참여)	-	4,000	4,000	신규(시민)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293,744	1,070,557	△223,187	-17.3%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751,109	1,070,541	319,432	42.5%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	300,000	-	△300,000	-100.0%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123,200	123,200	-	0.0%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681,534	412,014	△1,269,520	-75.5%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지원	20,466,654	22,020,035	1,553,381	7.6%
사회서비스혁신추진만 운영	390,500	400,000	9,500	2.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	-	230,000	230,000	신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	8,870,738	8,870,738	신규
자녀양육 고민을 나누는 부모교육프로그램 "우리엄마가 달라졌어요"(시민참여)	6,500	-	△6,500	-100.0%
아동 텃밭조성 사업(시민참여)	4,700	-	△4,700	-100.0%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환경개선)사업(시민참여)	80,000	-	△80,000	-100.0%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7,327,184	35,593,333	8,266,149	30.2%
서울특별시복지상 시상	35,100	35,100	-	0.0%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26,071,500	33,459,068	7,387,568	28.3%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367,584	397,165	29,581	8.0%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	653,000	1,702,000	1,049,000	160.6%
서울복지박람회 개최	200,000	-	△200,000	-100.0%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복지정책과)	328,251	371,698	43,447	13.2%
기본경비	328,251	371,698	43,447	13.2%
기본경비	328,251	371,698	43,447	13.2%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일반예산(재무활동)	2,062,958	-	△2,062,958	-100.0%
보전지출(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062,958	-	△2,062,958	-100.0%
국고보조금 반환	2,062,958	-	△2,062,958	-100.0%
희망복지지원과	2,506,635,625	2,798,601,495	291,965,870	11.6%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1,961,602,855	2,172,870,461	211,267,606	10.8%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705,785,959	729,876,749	24,090,790	3.4%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672,799,728	693,552,000	20,752,272	3.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재산장제급여	3,895,920	5,394,752	1,498,832	38.5%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8,399,944	8,171,997	△227,947	-2.7%
정부양곡 할인 지원	20,690,367	22,758,000	2,067,633	10.0%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40,621,420	42,559,956	1,938,536	4.8%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2,808,220	22,725,900	△82,320	-0.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7,163,200	19,184,056	2,020,856	1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650,000	650,000	-	0.0%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859,741	4,696,344	1,836,603	64.2%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382,139	315,408	△66,731	-17.5%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 지원	111,168	-	△111,168	-100.0%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2,336,434	4,380,936	2,044,502	87.5%
강서푸드뱅크마켓의 새로운 도약(시민참여)	30,000	-	△30,000	-100.0%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96,268,184	1,255,769,722	159,501,538	14.5%
의료급여사업	1,094,029,274	1,253,566,662	159,537,388	14.6%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2,238,910	2,203,060	△35,850	-1.6%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116,067,551	139,967,690	23,900,139	20.6%
긴급복지지원사업	17,337,000	24,678,000	7,341,000	42.3%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5,125,440	10,000,000	4,874,560	95.1%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745,800	1,009,000	263,200	35.3%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1,104,298	1,366,260	261,962	23.7%
통합사례관리 지원-인건비	2,613,750	2,661,000	47,250	1.8%
통합사례관리 지원-구 사례관리비	225,000	225,000	-	0.0%
통합사례관리 지원-동 사례관리비	2,671,200	2,671,200	-	0.0%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86,011,063	94,221,314	8,210,251	9.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13,000	14,000	1,000	7.7%
수호천사와 함께하는 힐링 쉽 콘서트(시민참여)	23,000	-	△23,000	-100.0%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33,000	-	△33,000	-100.0%
고독사 예방사업	165,000	675,000	510,000	309.1%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	1,873,716	1,873,716	신규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 형성사업 추진(시민참여)	-	5,000	5,000	신규(시민)
저소득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소 운영 (시민참여)	-	250,000	250,000	신규(시민)
우리동네 복지사 양성 및 활동지원 (시민참여)	-	133,200	133,200	신규(시민)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 지원 사업추진 (시민참여)	-	185,000	185,000	신규(시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96,298	152,586	56,288	58.5%
기본경비	38,358	52,446	14,088	36.7%
기본경비	38,358	52,446	14,088	36.7%
인력운영비	57,940	100,140	42,200	72.8%
인력운영비(의료급여사업)	57,940	100,140	42,200	72.8%
일반예산(재무활동)	544,936,472	625,578,448	80,641,976	14.8%
내부거래지출(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544,153,084	625,578,448	81,425,364	15.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544,153,084	625,578,448	81,425,364	15.0%
보전지출	783,388	-	△783,388	-100.0%
반환금 및 기타	783,388	-	△783,388	-100.0%
어르신복지과	1,854,116,801	2,261,086,771	406,969,970	21.9%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1,850,405,544	2,261,034,925	410,629,381	22.2%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218,377,926	233,742,491	15,364,565	7.0%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6,996,448	5,803,695	△1,192,753	-17.0%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6,730,534	6,250,733	△479,801	-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163,871,503	180,608,243	16,736,740	10.2%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8,875,561	5,732,832	△3,142,729	-35.4%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12,424,250	15,710,000	3,285,750	26.4%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5,845,100	15,871,162	26,062	0.2%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122,530	170,000	47,470	38.7%
어르신돌봄중상자 지원센터 운영	3,462,000	3,595,826	133,826	3.9%
치매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운영지원(시민참여)	50,000	-	△50,000	-100.0%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1,553,140,397	1,957,048,514	403,908,117	26.0%
기초연금 지급	1,550,678,577	1,954,972,988	404,294,411	26.1%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2,461,820	2,075,526	△386,294	-15.7%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31,399,734	36,545,961	5,146,227	16.4%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5,468,596	5,642,967	174,371	3.2%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928,740	1,185,276	256,536	27.6%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179,200	185,408	6,208	3.5%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2,867,313	2,700,000	△167,313	-5.8%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시비)	2,837,448	3,038,100	200,652	7.1%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기본	10,798,176	14,646,210	3,848,034	35.6%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종합	7,381,500	8,302,500	921,000	12.5%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단기	176,061	99,000	△77,061	-43.8%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사회관계활성화	502,500	739,500	237,000	47.2%
저소득 독거어르신 빨래방 운영(시민참여)	10,200	-	△10,200	-100.0%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시민참여)	250,000	-	△250,000	-100.0%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및 힐링콘서트 지원(시민참여)	-	7,000	7,000	신규(시민)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34,957,049	33,697,959	△1,259,090	-3.6%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25,090,799	27,428,959	2,338,160	9.3%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4,298,000	4,298,000	-	0.0%
	시립묘지 유지관리(5개소)	1,170,000	550,000	△620,000	-53.0%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350,000	500,000	150,000	42.9%
	고양시 대로3-33호선 도로확장 분담금	2,300,000	-	△2,300,000	-100.0%
	내곡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지원	1,748,250	-	△1,748,250	-100.0%
	용미리 자연장지 조성	-	921,000	921,000	#DIV/0!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도시개발특별회계)	12,530,438	-	△12,530,438	-100.0%
	서울 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12,530,438	-	△12,530,438	-100.0%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35,790	51,846	16,056	44.9%
	기본경비	35,790	51,846	16,056	44.9%
	기본경비	35,790	51,846	16,056	44.9%
	일반예산(재무활동)	3,675,467	-	△3,675,467	-100.0%
	보전지출(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3,675,467	-	△3,675,467	-100.0%
	국고보조금 반환	3,675,467	-	△3,675,467	-100.0%
	인생이모작지원과	247,931,610	302,005,385	54,073,775	21.8%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242,189,422	301,968,336	59,778,914	24.7%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87,896,888	84,746,531	△3,150,357	-3.6%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4,897,126	35,436,327	539,201	1.5%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24,473,397	28,992,297	4,518,900	18.5%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2,140,324	13,787,948	1,647,624	13.6%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392,000	392,000	-	0.0%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10,054,083	4,877,827	△5,176,256	-51.5%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1,107,224	707,872	△399,352	-36.1%
	50+지역 커뮤니티 활동(시민참여)	200,000	-	△200,000	-100.0%
	실버트레인 추억여행(시민참여)	25,000	-	△25,000	-100.0%
	개방형 경로당 조성(시민참여)	50,000	-	△50,000	-100.0%
	어르신일자리 창출(시민참여)	35,000	-	△35,000	-100.0%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281,478	284,460	2,982	1.1%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4,241,256	-	△4,241,256	-100.0%
	개방형경로당 시설개선(시민참여)	-	173,000	173,000	산규(시민)
	경로당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복지(시민참여)	-	4,800	4,800	산규(시민)
	옥상공간 마을공동체 텃밭사업(시민참여)	-	20,000	20,000	산규(시민)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세대통합 할키즈카페 조성(시민참여)	-	70,000	70,000	산규(시민)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154,292,534	198,467,363	44,174,829	28.6%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712,246	2,382,026	669,780	39.1%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12,115,559	158,309,982	46,194,423	41.2%
	보람일자리 사업	8,906,000	10,916,000	2,010,000	22.6%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3,584,400	14,464,789	880,389	6.5%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50+센터 확충 및 운영	4,081,233	4,830,520	749,287	18.4%
	50+캠퍼스 확충	7,169,443	-	△7,169,443	-100.0%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문화체육관광부 지원)	1,324,453	1,154,946	△169,507	-12.8%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고용노동부 공모)	1,779,200	1,779,200	-	0.0%
	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숙)	3,620,000	4,436,700	816,700	22.6%
	경로당 길라잡이 일자리 사업(시민참여)	-	193,200	193,200	신규(시민)
	은퇴후제2인생설계지원(도시개발특별회계)	-	18,754,442	18,754,442	회계변경
	50+캠퍼스 확충	-	18,754,442	18,754,442	회계변경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7,281	37,049	9,768	35.8%
	기본경비	27,281	37,049	9,768	35.8%
	기본경비	27,281	37,049	9,768	35.8%
	재무활동(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5,714,907	-	△5,714,907	-100.0%
	보전지출	5,714,907	-	△5,714,907	-100.0%
	국고보조금 반환	5,714,907	-	△5,714,907	-100.0%
	장애인복지정책과	209,193,552	229,677,039	20,483,487	9.8%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206,946,757	229,622,217	22,675,460	11.0%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49,024,149	165,625,689	16,601,540	11.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0,789,495	14,022,078	3,232,583	30.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7,218,732	19,206,231	1,987,499	11.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9,581,762	10,303,263	721,501	7.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7,016,326	99,615,441	2,599,115	2.7%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1,263,400	1,390,490	127,090	10.1%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67,200	67,200	-	0.0%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50,185	-	△50,185	-100.0%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865,565	1,292,677	427,112	49.3%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3,551,346	4,721,586	1,170,240	33.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154,000	420,000	266,000	172.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홍보(시비)	90,000	90,000	-	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6,080,000	9,864,000	3,784,000	62.2%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	1,865,000	1,865,000	신규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3,000	-	△3,000	-100.0%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510,000	790,000	280,000	54.9%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293,646	293,646	-	0.0%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1,256,992	985,077	△271,915	-21.6%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시민참여)	12,300	-	△12,300	-100.0%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무료대여(시민참여)	20,000	-	△20,000	-100.0%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시민참여)	102,000	-	△102,000	-100.0%
	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시민참여)	61,500	-	△61,500	-100.0%
	그룹홈 이용자 개인공간 만들기 사업(시민참여)	36,700	-	△36,700	-100.0%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시민참여)	-	375,000	375,000	신규(시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시민참여)	-	200,000	200,000	신규(시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	124,000	124,000	신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3,313,944	2,332,355	△981,589	-29.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239,814	1,377,188	137,374	11.1%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526,886	329,933	△196,953	-37.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547,244	625,234	△922,010	-59.6%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53,097,864	60,378,373	7,280,509	13.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841,243	857,345	16,102	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4,277,268	35,952,681	1,675,413	4.9%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720,503	1,755,010	34,507	2.0%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장애인 안마사 파견	1,717,210	1,748,528	31,318	1.8%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 일자리	1,584,065	2,079,705	495,640	31.3%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	2,913,768	3,971,277	1,057,509	36.3%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	9,847,881	12,535,852	2,687,971	27.3%
	장애인 일자리 지원-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185,926	517,851	331,925	178.5%
	찾아가는 효지손 사업(시민참여)	10,000	-	△10,000	-100.0%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	960,124	960,124	신규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1,510,800	1,285,800	△225,000	-14.9%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510,800	1,285,800	△225,000	-14.9%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39,247	54,822	15,575	39.7%
	기본경비	39,247	54,822	15,575	39.7%
	기본경비	39,247	54,822	15,575	39.7%
	일반예산(재무활동)	2,207,548	-	△2,207,548	-100.0%
	보전지출(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207,548	-	△2,207,548	-100.0%
	국고보조금 반환	2,207,548	-	△2,207,548	-100.0%
	장애인자립지원과	557,983,761	623,770,729	65,786,968	11.8%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556,201,586	623,726,656	67,525,070	12.1%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525,170,351	596,117,072	70,946,721	13.5%
	장애이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6,851,640	18,356,700	1,505,060	8.9%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190,584	217,600	27,016	14.2%
	장애이가족 아동양육지원	2,157,300	3,295,948	1,138,648	52.8%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8,651,900	11,884,687	3,232,787	37.4%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2,393,809	3,385,364	991,555	41.4%
	장애인복지관 운영	78,373,759	82,684,506	4,310,747	5.5%
	여성장애인 교육	342,446	344,446	2,000	0.6%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7,288,328	7,301,805	13,477	0.2%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6,622,793	6,779,012	156,219	2.4%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지원	391,929	396,959	5,030	1.3%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97,400	97,400	-	0.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5,565,961	5,658,389	92,428	1.7%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223,420,210	258,518,779	35,098,569	15.7%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526,087	385,286	△140,801	-26.8%
장애수당-기초	18,607,656	18,254,000	△353,656	-1.9%
장애수당-차상위 등	11,013,160	10,822,000	△191,160	-1.7%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11,104,920	13,920,000	2,815,080	25.3%
중증장애인연금	119,232,900	135,441,555	16,208,655	13.6%
장애인의료비 지원	5,019,620	6,441,630	1,422,010	28.3%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392,563	111,650	△280,913	-71.6%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521,249	530,587	9,338	1.8%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533,147	554,852	21,705	4.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315,000	234,000	△81,000	-25.7%
여성장애인 흡혈피 지원	1,210,842	1,604,430	393,588	32.5%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143,726	145,838	2,112	1.5%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258,888	334,880	75,992	29.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300,000	2,065,000	765,000	58.8%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700,000	700,000	-	0.0%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98,800	268,200	△30,600	-10.2%
지적장애인지리생활지원센터 운영	139,730	146,569	6,839	4.9%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134,400	120,000	△14,400	-10.7%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300,800	380,000	79,200	26.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3,284,000	3,284,000	신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운영지원	848,804	858,000	9,196	1.1%
시각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접자스터커 제작 배부	85,000	-	△85,000	-100.0%
장애인이 맘 편히 운동할 수 있는 시설과 운동기구들이 필요해요 (시민참여)	120,000	-	△120,000	-100.0%
소리 친구 저의 눈빛을 알아맞혀주세요 (시민참여)	15,000	-	△15,000	-100.0%
재가 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시민참여)	-	265,000	265,000	신규(시민)
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잔고장 수리사업(시민참여)	-	313,000	313,000	신규(시민)
장애인 재활운동기구 교체사업(시민참여)	-	15,000	15,000	신규(시민)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13,517,209	5,486,103	△8,031,106	-59.4%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3,143,657	4,602,852	1,459,195	46.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321,923	279,887	△42,036	-13.1%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2,624,015	493,364	△2,130,651	-81.2%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	1,500,000	-	△1,500,000	-100.0%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3,624,000	110,000	△3,514,000	-97.0%
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2,303,614	-	△2,303,614	-100.0%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17,514,026	22,123,481	4,609,455	26.3%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2,372,536	1,805,064	△567,472	-23.9%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1,741,280	1,901,111	159,831	9.2%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13,400,210	18,402,306	5,002,096	37.3%
무장애 마을 만들기(시민참여)	-	15,000	15,000	신규(시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31,881	44,073	12,192	38.2%
기본경비	31,881	44,073	12,192	38.2%
기본경비	31,881	44,073	12,192	38.2%
재무활동(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750,294	-	△1,750,294	-100.0%
보전지출(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750,294	-	△1,750,294	-100.0%
국고보조금 반환	1,750,294	-	△1,750,294	-100.0%
자활지원과	133,509,969	195,241,166	61,731,197	46.2%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56,592,839	51,497,556	△5,095,283	-9.0%
노숙인 자활지원	32,602,521	27,576,802	△5,025,719	-15.4%
거리노숙인 보호	7,160,375	7,431,027	270,652	3.8%
노숙인 등 일자리지원	9,152,790	10,320,112	1,167,322	12.8%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1,389,008	2,233,406	844,398	60.8%
쭉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쭉방상담소 운영 지원)	7,044,843	2,067,453	△4,977,390	-70.7%
노숙인 등 의료지원	6,864,905	4,843,704	△2,021,201	-29.4%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730,600	681,100	△49,500	-6.8%
노숙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시민참여)	260,000	-	△260,000	-100.0%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3,990,318	23,920,754	△69,564	-0.3%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0,683,583	11,229,919	546,336	5.1%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4,087,425	4,214,920	127,495	3.1%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7,344,565	7,347,075	2,510	0.0%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1,164,995	874,916	△290,079	-24.9%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 기능보강	709,750	253,924	△455,826	-64.2%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72,948,313	143,703,759	70,755,446	97.0%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72,948,313	143,703,759	70,755,446	97.0%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551,880	547,880	△4,000	-0.7%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6,760,584	7,156,756	396,172	5.9%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	521,325	521,325	신규
자활근로사업 지원	51,552,717	113,572,305	62,019,588	120.3%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230,300	234,134	3,834	1.7%
자활장려금	-	9,261,923	9,261,923	신규
희망키움통장Ⅰ	2,959,650	2,362,500	△597,150	-20.2%
희망키움통장Ⅱ	8,111,708	7,036,940	△1,074,768	-13.2%
내일키움통장	674,356	554,796	△119,560	-17.7%
청년희망키움통장	2,097,118	2,455,200	358,082	17.1%
인문학에서 길을 찾다(시민참여)	10,000	-	△10,000	-100.0%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자활지원과)	29,243	39,851	10,608	36.3%
기본경비	29,243	39,851	10,608	36.3%
기본경비	29,243	39,851	10,608	36.3%
일반예산(재무활동)	3,939,574	-	△3,939,574	-100.0%
보전지출(복지본부 자활지원과)	3,939,574	-	△3,939,574	-100.0%
국고보조금 반환	3,939,574	-	△3,939,574	-1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II. 기금운영계획안

- 복지본부 소관 기금(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의 2018년도말 총 조성액은 3,184억 4천 4백만원으로 사업비 및 제반비용으로 121억 6천 7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8년말 조성액 ①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말 조성액 ⑤ = ① + ④
			수입 ②	지출 ③	증감 ④ = ② - ③	
총 계		318,144	5,339	12,167	△6,828	312,317
사 복 기 회 지 금	소 계	42,834	3,042	4,842	△1,800	42,034
	노인복지계정	13,425	323	974	△651	12,774
	장애인복지계정	22,657	2,074	3,025	△951	22,706
	자활계정	6,752	645	843	△198	6,554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5,310	2,297	7,325	△5,027	270,283

※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지출액은 융자성·비용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 각 기금별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노인복지 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9억 7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5%(7천6백만원) 증액 편성된 바,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1억 1천 9백만원, 어르신 정보화 교육 2천만원, 어르신 자원봉사 1억 3천 9백만원(전년대비 증 3백만원),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억 5천만원(전년대비 증 5천만원), 경로효친 행사지원 2천

7백만원,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3천만원,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1억원(전년대비 3천3백만원), 어르신 지도자육성 1억 6백만원,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8천만원, 어르신 주거지원 9천만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장애인복지 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30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 동일하며,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지원 7억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에 23억원, 자금관리비 2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자활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8억 4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7%(△3억 3천 9백만원) 감액 편성된 바,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8천만원, 자활교육훈련 1억 1백만원(전년대비 증 3천7백만원),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2억 9천 7백만원(전년대비 △2억5천6백만원), 자활유통활성화 5천3백만원(전년대비 △7백만원),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2억원(전년대비 △1억원),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1억 7백만원(전년대비 △1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73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1.3%(54억5천3백만원) 증액편성된 바, 이재민 재해보상에 3억 4천 7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에 4억 9백만원(전년대비 증 5천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에 65억 6천 9백만원(전년대비 증 54억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세입 예산안 검토

- 복지본부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8년 세입예산은 총 3조 4,878억 2천 7백만원으로 '17년 예산액 3조 1,071억 4천 5백만원보다 3,806억 8천만원 증액(12.3%) 편성되었음.

< 2019년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예산	2019예산(안)	증 · 감	
			증감액	비율(%)
계	3,392,628	4,051,730	659,103	19.4%
일반회계	2,296,302	2,795,860	499,559	21.8%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096,326	1,255,870	159,544	14.6%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7,958억 6천만원으로 2018년도 2조 2,963억 2백만원보다 4,995억 5천 9백만원 증액(21.8%)되었음.

○ 공유재산 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승화원·추모공원 매점 등 임대수입(434백만원) 및 송전선로 통과토지 점용료(7.3백만원)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서, 11억 2천 6백만원 (전년대비 166.1%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증액사유를 보면,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임대료 134백만원) 및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청사 사용료(157백만원)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서, '18년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으로 편성하였으나, '19년 재산임대수입으로 편성하여 증액되었음.
- 위 회계 항목 변경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및 제26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표 1〉 재산임대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과 목	2018년	2019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재산임대수입	423,225	1,126,284	703,059	16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 (0 → 134백만원)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청사 사용료 (0 → 157백만원) • 50+재단 및 캠퍼스 임대수입 (0 → 394백만원) ※ '18년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으로 편성하였으나, '19년 재산임대수입 편성 (세무과 자문) • 승화원·추모공원 매점 등 임대수입 (416 → 434백만원) • 송전선로 통과토지 점용료 (6.8 → 7.3백만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수수료 수입 및 사업수입

- 수수료 수입은 승화원과 추모공원 제증명 수수료(화장 및 납골증명 등 증지수입)를 반영한 것으로서 세입추계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 2019년 수수료 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과 목	2018년	2019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수 수 료 수 입	31,293	32,626	1,333	4.3%	• 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 제증명 수입 (31 → 33백만원)

- 2018년 추계액 : 31,293천원
- 산출내역 ('18년도 예상화장건수 × '16년도 화장 1구당 평균 제증명 발급건수 × 400원)
 - 승화원 제증명 수입 : 35,985건(화장) × 1.44건 × 400원 = 20,727천원
 - 추모공원 제증명 수입 : 17,610건(화장) × 1.5건 × 400원 = 10,566천원

〈표 3〉 2018년 주차장 세입추계

(단위 : 천원)

- 2018년 추계액 : 74,235천원
- 산출내역 : 18년도 예상화장건수 X '16년도 화장 1구당 평균 개인차량 이용건수 X 1구당 평균 주차료
 - 17,080건(화장) x 2.14건 x 2,031원 = 74,235천원
 - *시림승화원 2017년부터 무료화로 2018년도 예산편성 제외

〈표 4〉 2018년 기타사업수입 세입추계

- 2018년 추계액 : 12,930,394천원
- 산출내역
 - 화장료 수입 : 10,281,227천원(승화원 7,528,003천원, 추모공원 2,753,224천원)
(16년도 일평균 화장현황×365일×서울시, 전국 평균 화장증가율 1.03%)
 - 봉안 사용료 : 188,350천원(최근 4개년간 봉안현황 평균치 산정)
 - 봉안 관리비 : 646,273천원(18년도 관리비 고지대상 × 4개년 관리비 평균징수율)
 - 분묘 관리비 : 95,003천원(18년도 관리비 고지대상 × 4개년 관리비 평균징수율)
 - 자연장 사용료 : 1,243,500천원('16년 자연장 이용실적 반영)
 - * (일반) 2,266건 × 500천원 = 1,133,000천원
 - *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442건 × 250천원 = 110,500천원
 - 봉안함 판매수입 : 476,041천원(승화원 : 247,607천원, 추모공원 : 228,434천원)
(16년도 화장 1구당 평균 봉안함 수입금 × 18년도 예상화장건수)
 - * 승화원 봉안함 판매 사용료 : 35,985건(화장)X0.33건X20,851원=247,607천원
 - * 추모공원 봉안함 판매 수수료 : 17,610건(화장) X 0.43건X30,167원 = 228,434천원

○ 기타 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민간시설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타 수입 세부내역을 보면 전년대비 증감률이 6.33%를 나타내고 있음.

〈표 5〉 기타 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과 목	2018년	2019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기 타 수 입	34,449,701	36,630,499	2,180,798	6.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비반환금수입 - 자치구 반납 (29,149 → 28,595백만원) • 민간시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453 → 5,449백만원) • 보조금카드 포인트 적립금 (2,836 → 2,567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지난연도 부과한 세입 중 체납분(2,437백만원)과 승화원 체납관리비 수입(567백만원)을 반영한 세입 편성안임.

〈표 6〉 지난연도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과 목	2018년	2019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지 난 연 도 수 입	2,690,491	3,004,144	313,653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지난연도 부과한 세입 중 체납분 (2,138 → 2,437백만원) • 승화원 체납관리비 수입 (552 → 567백만원)

○ 국고보조금

- 2019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을 국고보조금의 가내시 통보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22.2% 증액한 2조 7,287억 8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빈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표 7〉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과 목	2018년	2019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국고보조금 등	2,232,895,350	2,728,786,931	495,891,581	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2,218,404 → 2,713,311백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425 → 8,368백만원) • 기금 (5,066 → 7,108백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2018년도 복지본부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서울희망드림뱅크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전년 예산(190억8천1백만원) 대비 △34.0% 감액된 125억 9천 1백만원의 예산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표 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단위: 천원)

과 목	2017년	2018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591,385	13,317,501	726,116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780백만원 → 12,356백만원) • 희망드림뱅크 용자금 수입 (302백만원 → 236백만원)

※ 서울희망드림뱅크 용자사업은 2009년과 2010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개월 거치·54개월 상환기간 조건으로 용자된 것인 바, 2009년 용자수혜자는 2015년부터 2010년 수혜자는 2016년부터 연체지급 의무를 부담함.

- 2017년 서울희망드림뱅크 용자사업의 징수액을 추계할 때, 전년도인 2016년도 징수액에 감액비율(0.85) 적용하였지만, 2018년의 경우에는 상환완료자 및 개인파산으로 상환불능자와 연체자 등이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전망액보다 더 높은 할인율(감액비율 0.7)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표 9〉 서울희망드림뱅크 용자금 산출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추계액 : 235,620천원 ◦ 산출내역 : '16년도 징수액 × 0.7(감액비율 적용) - 상환완료자, 개인파산으로 상환불능자, 연체자 등이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17년도 전망액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
--

〈표 10〉 최근 5년간 세부 내역별 징수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604,152	410,849	336,600	132,998	0
용자금 원금 회수	604,152	410,849	336,600	132,998	0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2,558억 7천만원으로 2018년의 1조 963억 2천 6백만원에 비해 285억 9천 6백만원을 증액(14.6%) 편성하였음.

〈 2018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8년	2019년(안)	증 감	증감률	내 역
계	1,096,326	1,255,870	159,544	14.6%	
세외수입	526	2,621	2,095	3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법 위반 의료기관 과징금 징수 (38백만원 → 96백만원) • 의료급여사업 기타 잡수입 (489백만원 → 2,525백만원)
보조금	544,153	625,578	81,425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544,153백만원 → 625,578백만원)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51,647	627,670	76,024	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세계잉여금 (7,494백만원 → 2,092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544,153백만원 → 625,578백만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전입금이 증액편성(488,418백만원 → 547,046백만원)된 바, 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16년 12월 기준 245,719명(1종 168,694명, 2종 77,025명) → '17년 10월말 기준 246,848명(1종 170,369명, 2종 76,479명)(16년 대비 17년 1,129명↑))가 증가한 결과라고 하겠음.

○ 과징금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과징금 수입에 대한 결산 내역과 세입 추계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1〉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888,300	889,819	934,190	938,693	1,067,662	1,066,318	1,096,326	691,860	1,098,418	1,255,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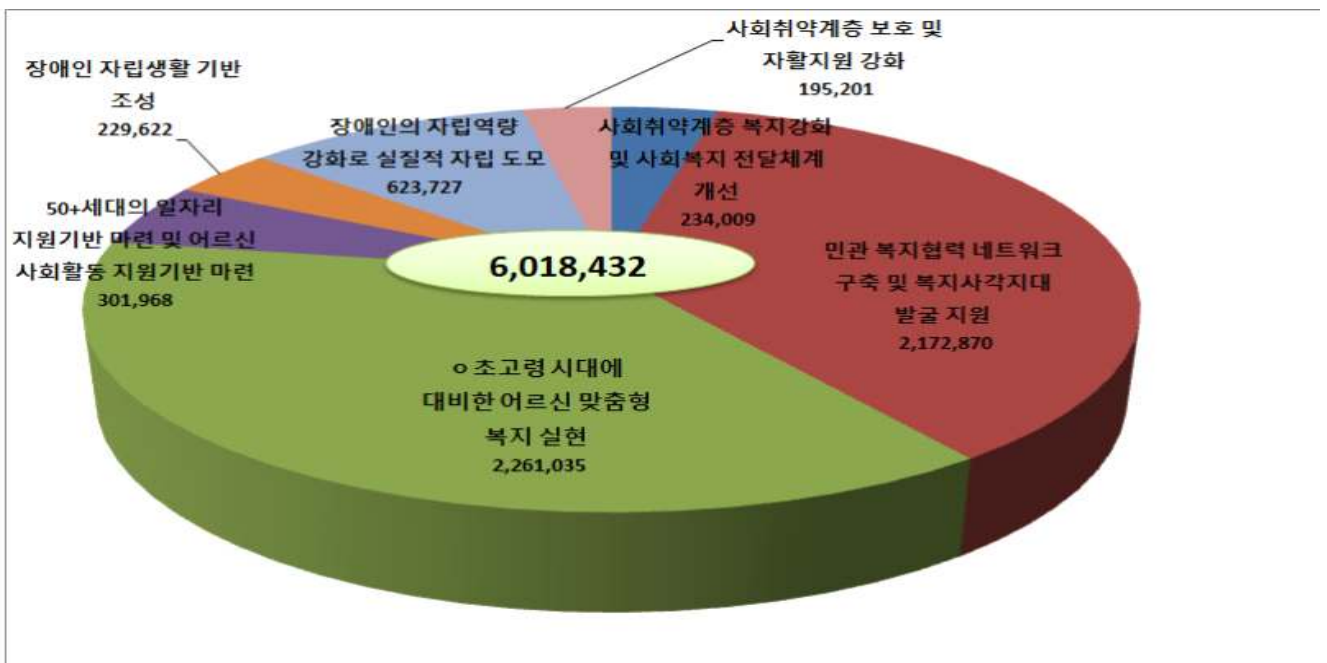
〈표 12〉 2018년 과징금 세입추계

- 2018년 추계액 : 37,674천원
- 산출내역: 의료급여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수입

2 세출 예산안 검토(조직별 예산안 총괄적 검토)

- 2019회계연도 복지본부 예산안을 보면 전체 6조 6,44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책별로 구분하면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에 2천3백4억원(3.89%),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정책사업에 2조 1,728억원(36.1%),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 맞춤형 복지실현 정책사업에 2조 2,610억원(37.57%), 50+세대의 일자리 지원기반 마련 및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에 3천 19억원(5.02%),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로 실질적 자립도모 정책사업에 8천5백3십 3억원(14.18%),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사업에 1,952억원(3.24%) 순으로 편성하였음.

〈그림 1〉 2019년도 복지본부 정책별 예산 규모 현황



가.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는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여 2018년 최종예산 1,976억 7천5백만원에서 18.57% 증가된 2,343억 8천 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표 13〉 복지정책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8예산(A)	2019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665,750	2,202,000	536,250	32.2%
보훈단체 지원	2,128,100	2,578,100	450,000	21.1%
보훈대상자 등 지원	33,608,350	51,362,960	17,754,610	52.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988,804	1,130,040	141,236	14.3%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217,916	3,566,708	348,792	10.8%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751,109	1,070,541	319,432	42.5%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26,071,500	33,459,068	7,387,568	28.3%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	653,000	1,702,000	1,049,000	160.6%
□ 주요 삭감사업(10% 이상)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293,744	1,070,557	△223,187	△17.3%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681,534	412,014	△1,269,520	△75.5%
□ 신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0	143,120	143,120	신규(국비)

가. 신규 사업

(1)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i) 현황

○ 위 사업은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201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 시장 대폭 확대되었고 특히, 민간사회서비스 기관 및 종사자 수는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과도한 민영화, 시장화로 사회서비스 질 저하 등 한계점이 나타남으로 인한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의해 추진되었음.

장기요양시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공립(개소)	215	225	203	230	228	220
개인(개소)	11,113	10,946	11,080	11,730	12,569	13,995

- 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으로 지자체에 의해 설립된 재단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민간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가능 여건 확보 및 요양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88억 7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지원대상은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에 속하는 생활시설과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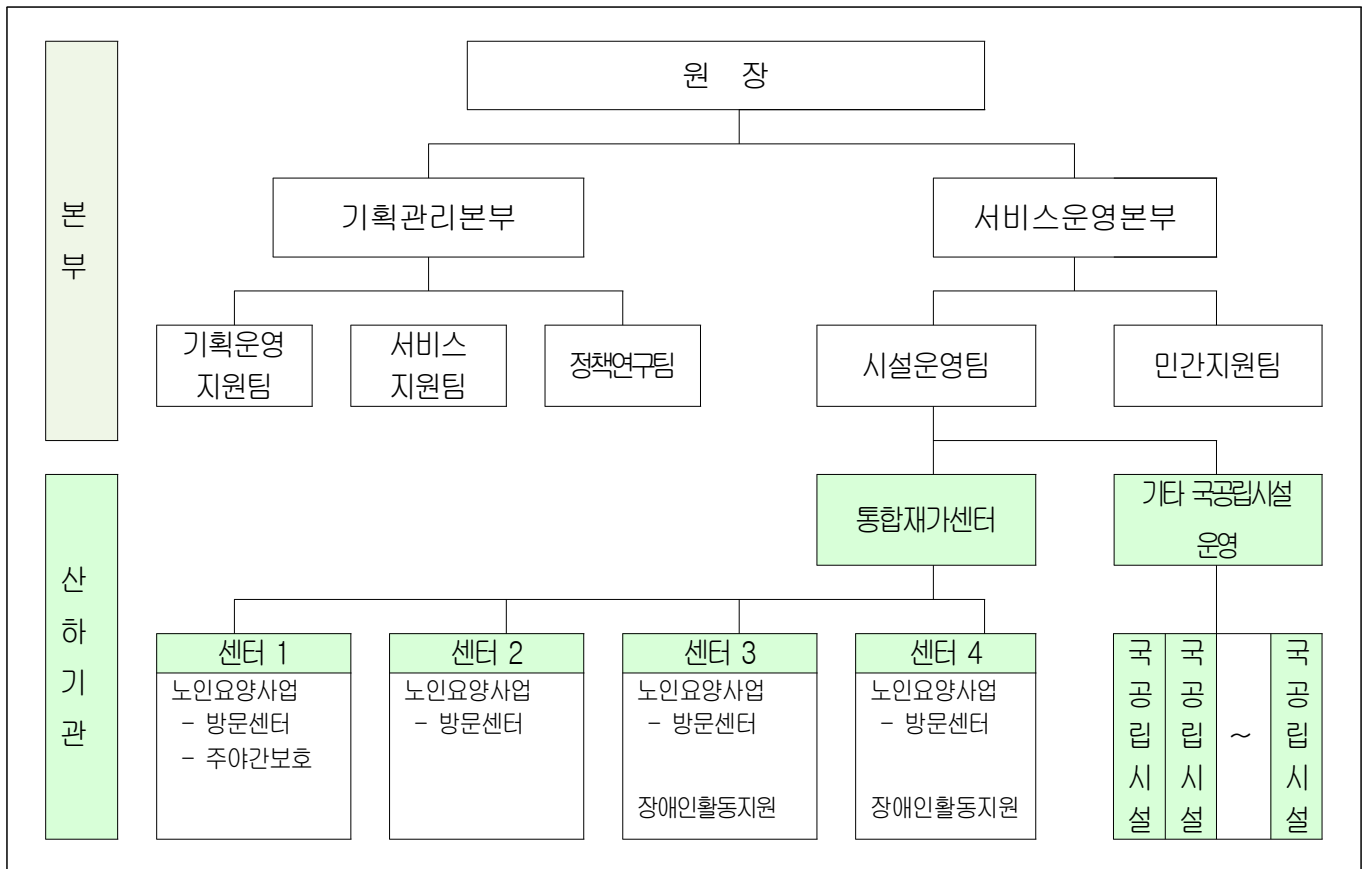
〈표 14〉 19년 예산 추진 계획안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8,870,738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본부 설립	2019.01~2019.06	2,039,800	초기 제반 구축 및 본부 운영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2019.07~2019.12	6,830,938	본부 및 산하기관 4개소 운영

- 집행부가 제출한 '19년 조직 및 인력운영(안)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원 본부 구성은 1원 2본부 5팀으로 인력 규모는 검토 중에 있으며 산하시설로 통합재가센터 및 국공립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산하시설 사업대상 및 운영 규모는 연 구용역 추진 중이며 추후 확정 예정이라고 함.

<표 15> 업무추진 체계



ii) 사회서비스 설립 및 운영 사업에 대한 문제점

- 같은 사업은 장기요양, 장애인분야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신규시설, 위탁 만

료 시설에 대한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및 거점별 통합재가센터 운영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라는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에 대한 단계별 확대를 통한 인프라 확충에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시설이나 재가의 양한 기능들을 어떻게 포괄할 것이며,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거점재가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돌봄과 연계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장기요양기관들의 자치구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자치구가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어떤 이견 없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운영권을 양도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의의 쟁점사항으로 보여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이 공공운영주체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확충 및 일자리 질을 제고하는 등의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만으로 장기요양과 관련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만능해결책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임.
- 현행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난맥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과 일자리 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상의 장기요양 제도개혁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여짐.
- 기존의 관리조직과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의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서울복지재단과의 역할 중복 등에 대한 관계성 문제에 대하여 설립 초기 계획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체적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및 기능이 무엇인지 반드시 정립해야 할 것으로 선행조건으로 보여짐.
- 아울러 옥상옥 조직이 될 소지의 문제 또한 논란이 존재하므로 서울시 서비스원

인력 채용 방식 및 사회서비스원에 포함되지 못하는 제공인력의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한 검토 필요함.

-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재가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업무량과 급여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은데 월급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근무시간 관리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iii) 검토의견

-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었다고 보여지나, '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액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촘촘히 계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서비스 제고 및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는 재단이므로 보다 면밀한 예산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범사업규모도 현재 제시한 안보다는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내실화 확보를 위해 바람직함.
- 위 사업에 대한 예산(안)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출연금 76억 7천 8백만원 (인건비 22억 3천 5백만원, 운영비 7억 6천 1백만원, 서비스 개발 및 교육 4억 6천 9백만원, 전산시스템 구축 3억, 산하기관 설치 및 관리 19억 1천 3백만원, 기본재산 10억, 예비비 10억)으로 산정되어 있음
- 그러나 이 출연금 중 서비스 개발 및 교육(4억 6천 9백만원)과 전산시스템 구축(3억원)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 체계 구축 사업(2억 3천만원)으로 산정한 예산금액과 중복의 성격이 강하므로 예산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산하기관 설치 및 관리(19억 1천 3백만원)항목으로 산정한 예산액의 경우에도 19년도에 운영될 사업이 시범사업 위주로 할 예정이므로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규모를 축소하여 시행하는 것일 바람직함.

- 예비비(10억원)로 산정된 예산액의 경우에도 과다 계상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예산산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나. 주요 증감사업

(1)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1) 현황

- 위 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전년도 대비 73억 8천 6백만원 증액된 334억 5천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2003년 설립된 복지재단은 ① 선도적 복지정책 및 모델 개발 ② 복지공동체 조성 및 복지자원 공유 네트워크 구축 ③ 민간자원 개발 및 나눔네트워크 구축 ④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표 16>복지재단 주요 예산 증액 내역(출연금)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18년 예산	'19년 예산	증액	증액사유
1	서울형 평가·인증·기능보강 고도화	733,028	964,830	231,802	(계속)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증 사업확대 138백만원 증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사업 확대 32백만원 증가 (신규) 좋은돌봄 인증 사업 61백만원 증가
2	서울희망플러스 통장 매칭사업	147,000	65,131	△81,869	'19년 중 종료되는 사업으로 신규 선발 없음 : 감 82백만원
3	서울꿈나래통장 매칭사업	917,000	1,130,052	213,052	출연금 지원비율 확대(60% → 80%) 및 '19년 신규선발(500명) : 213백만원 증가
4	희망두배 청년 통장 매칭사업	2,631,838	6,033,979	3,402,141	출연금 지원비율 확대(60% → 80%) 및 '19년 청년통장 선발인원 확대 (1,000명 → 2,000명) : 3,402백만원 증가

					※'18년 편성시 60%, 1,000명분만 반영
5	장애인자산형성 사업(이룸통장)	1,752,819	4,122,214	2,369,395	'19년 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선발 1,000명 및 장애인자산형성 지원사업 확대 : 2,369백만원 증가
6	공공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성 제고	329,776	215,574	△114,202	(종료) 찾동 실천사례 발굴 및 보급, 감27백만원 (계속) 찾동 콘텐츠개발 및 운영지원 등 감 87백만원
7	기관운영비 (인건비)	8,882,493	9,831,913	949,420	'19년 인상률 3.2% 반영, 511백만원 증가 '18년 예비비에 반영한 신규 채용인력(9명) 인건비 12개월 분 반영

2) 사업별 현황 및 문제점

(가) 서울형 평가·인증·기능보강 고도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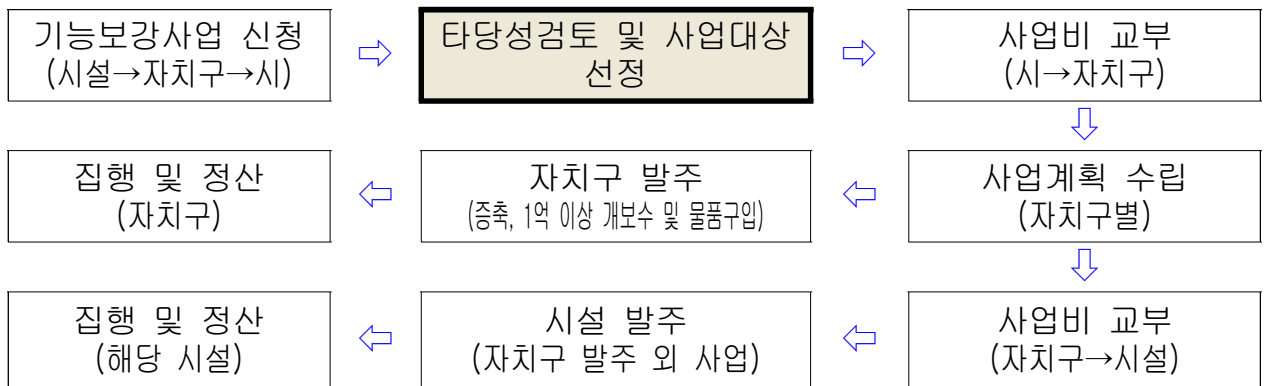
○ 사업현황

- 위 사업은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서비스를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에 근거하여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서울형 평가·인증 전문위원 양성,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지원 컨설팅,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인증 사업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 및 공익법인 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시행된 정책임을 감안할 때, 현재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10개소 중 6개소만 인증되고, 인증 탈락 2개소, 중도 포기 2개소라는 결과가 나옴
- 또한, 재단은 시설환경 및 서비스 질 개선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본부의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를 전담하고 있음

- 시행시기 : 2004년부터 실시
- 대 상 :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중 시에서 타당성 검토 의뢰 사업
- 수행인력 : 재단 평가인증팀 5명
- 검토내용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 차량 등의 사업 필요성 및 예산 적정성

연 도	검토대상	비 고
2017년	424개소(714건) 405억원 검토	486건 188억원 지원의견 제시 (조정비율 46.6%)
2018년 9월 현재	403개소(743건) 446억원	12월 완료예정

<복지본부 기능보강사업 추진절차>



○ 서울형 평가·인증·기능보강 고도화 사업의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인증사업의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심의 신청한 법인이 적으며 9월 30일 기준 총 사업비 기준 6.3%에 해당하는 233만원을 집행했을 뿐임.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은 운영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일부 운영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기부금 및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신뢰를 시민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법적 강제성을 강구하지 못하더라도 인증을 받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의 표준화 마련 필요함.

아래표에서 보여지듯이 소관부서(담당자)에 따라 구비서류 종류 및 내용이 상이하며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구비서류나 양식, 기준이 없음

- 실제 공사가 시방서나 준공계 상 내용과 동일·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가 없으며 현장대리인제나 공사 전후 사진처럼 구비서류 일부를 통해 확인해야하는 단순히 절차상 요식행위 가능성이 존재함.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	늘푸른집 (장애인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기안문 • 견적서 및 타견적서 • 산출기초조사서 • 공사도급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공사대금지급기안 • 대금청구서 • 사용인감계 • 공사 전후사진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공사 전문자격증사본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기안문 • 준공계 • 준공감사원 • 견적서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공사 전후사진

<표 17> 복지본부 최근 2년간(2017~2018) 기능보강사업 집행 현황

소관부서명	회계 연도	기능보강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수)							
		전체 기능보강 사업수	총개 소수	예산총액	집행총액	수의계약 사업수	수의계약 개소수	수의계약 사업 예산총액	수의계약 사업 집행총액
복지정책과	2018	177	82	3,218	2,355	115	64	1,301	1,301
	2017	175	79	2,146	2,005	162	72	1,526	1,526
어르신 복지과	2018	8	7	133	133	8	7	133	133
	2017	18	13	289	257	18	13	289	257
인생이모작 지원과	2018	77	53	1,435	1,313	59	56	994	976
	2017	91	45	2,346	2,144	62	56	1,649	1,640
장애인복지 정책과	2018	101	54	5,746	2,850	40	40	625	582
	2017	78	163	5,721	2,528	57	60	1,109	1,078
장애인자립 지원과	2018	51	61	5,941	3,064	36	33	3,550	1,589
	2017	47	58	6,050	5,841	39	32	3,511	1,418
자활지원과	2018	64	46	1,374	415	64	21	434	415
	2017	55	47	1,875	309	55	23	358	309
총계		942	708	36,274	23,214	715	477	15,479	11,224

※ 전체 기능보강사업 중 수의계약 75.9% / 예산액의 48.3% 차지함

(나)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

○ 현황

-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희망플러스 통장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개요와 참여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8> 통장지원사업

구분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저축인원		128명	2,264명	4,269명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45~60%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본인소득 220만원 이하 부양가족 중위소득 80% 이하
	기타	만18세 이상, 근로소득 시민	만14세 이하 자녀 있는 시민	만18세이상 ~ 만34세 이하 근로소득 시민
저축액/기간		10·20만원 / 3년	5·7·10·12만원/3·5년	10·15만원 / 2·3년
저축목표		주거·창업·고등교육비	자녀 교육비	교육·주거·창업·결혼
재원부담목표		서울시 예산 80% / 민간후원금 20%		
매칭비율		기초생활수급자 1:1 / 비수급자 1:0.5		1:1
'18년 신청자현황		-	1,322명 (경쟁률 2.6:1)	14,099명 (경쟁률 7:1)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장지원사업은 주거·창업·교육·결혼자금 등 생산적 목적의 저축에 일정 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자립도모 및 탈빈곤 토대 마련을 위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저소득 자산형성 통장 사업의 문제점

- 2017년 8월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결과,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운영 부적정을 지적받음

<표 19>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사업 현황

구분		희망키움1 통장	희망키움2 통장	내일키움 통장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40~60%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시 최근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 (월 실근무일 12일 이상)
	기타	근로소득 생계·의료수급가구	근로소득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저축액/기간		10만원 / 3년	10만원 / 3년	5·10만원
매칭비율		10:33	1:1	1:1 / 1:0.5 / 1:1.5

<표 20> 보건복지부·서울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사업 중복수혜 현황

중복수혜 사업	중복수혜인원	보건복지부 적립금	서울시복지재단 적립금
희망키움통장 1	3	12,268,000	11,575,000
희망키움통장 2	7	7,800,000	32,000,000
합계	10	20,068,000	43,575,000

- 특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모두 타 부처의 자산형성사업에 참가할 경우 중복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여자 중에서 중복 수혜를 받아 특정인 또는 특정 가구에 중복 지원되는 등 수혜자격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형평성 있게 돌아가지 못하여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받음에 대한 중복수혜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 중복 수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중복 수혜를 사전에 방지하고 통장 사업으로 진입 후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매칭지원율 향상 및 선발인원 확대예정이나 재원 부담

가중에 따른 예산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며, 재원 마련에 대한 민간후원금 관련 구체적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서울시복지재단의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사업의 경우 특정 저축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만기저축완료 시 해당 지원금을 통해 약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기저축금 수령 후 실제 약정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기존의 저축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함
-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위해서는 통장 매칭지원 적립 외에 내실화된 금융교육과 재무 컨설팅, 고용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직업 정보 제공 및 지속적 사례 관리가 필요함.
- 중복수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서울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진입한 후 타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체계적인 가입자 관리가 필요함
-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본래 약정한 저축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함.

(다) 복지재단의 예산 집행관련

- 2018년 지출예산 집행률 중 50% 이하는 11건을 약 75억 9천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해야하는 사항임.
- 동일건에 대한 추정 불용액은 8건이 불용액 발생 예상이되며, 4건은 추정 불용액이 높은 사항임.

○ 예산 집행 관련한 문제점

- 아래표에서 계상되는 불용액은 추정불용액이므로 현재 예상한 추정불용액보다 더 높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며, 전년도 사업추진율도 비슷하게 나오므로 추진율이 미진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는 것은 복지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전년도 집행률 및 사업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의 재단의 노력이 필요함.

<표 21> 2018년 9월말 예산집행 및 연말결산 추정 불용현황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추정액	불용율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63,161	22,889	11,899	18.8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36,965	2,330	18,446	49.9
서울형 평가·인증 전문위원 양성	60,220	18,176	5,239	8.7
청렴감사활동 지원 및 청렴문화 확산	21,320	6,034	6,034	28.3

(라) 복지재단 인력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인력현황

- 복지재단 정원현황은 '19년 164명에서 6명 증원된 인력 6명을 포함한 170명으로 업무 분장에 따른 필요인력 확보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 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 내규에서 명시한 보조업무 담당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근로조건

보장을 도모한다고 재단 내규로 규정하고 있음.

<표 22> 복지재단 정원 현황 ('19년 정원 170명, 6명 증원)

(단위 : 명)

구분	계 (A+B)	일반직										한시정원			
		소계 (A)	대표 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 급	미 화 직	소계 (B)	4 급	5 급	6 급
'17년 말	151	144	1	1	10	22	22	20	49	17	2	7	1	2	4
'18.1. 1차 증원	+9	+9	0	0	0	0	+2	+3	+2	+2	0	0	0	0	0
'18.7.10차 증원	+4	+4	0	0	0	0	0	0	+1	+3	0	0	0	0	0
'18년 정원	164	157	1	1	10	22	24	33	52	22	2	7	1	2	4
'19년 증원	+6	+6	0	0	0	0	+1	0	0	+5		0	0	0	0
증원 후	170	163	1	1	10	22	25	33	52	27	2	7	1	2	4

<표 23> 복지재단 인건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분	2018예산	2019요구	증감액	증감률	비고
인건비	8,882,493	9,831,913	949,420	10.7	- 인건비 상승률 3.2% 적용 - 18년말 정원 반영(17년말 대비 13명 증원)
성과급	1,004,388	1,217,647	213,259	21.2	- '18년도 인건비 상승률 4.0% 적용에 따른 증가 - 추가 지급대상자 반영 : 18년 신규채용 인력(9명) - 성과급 지급률 상승 (170 → 190)

○ 인력 관련 문제점

- 2016년 2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발표한 '복지재단 경영컨설팅'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복지사업 확대가 지속적인 복지재단의 예산·인력·조직 확장으

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개별 사업 완료 이후에도 사후관리 및 지역복지와 평가 및 역량강화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므로 적재적소의 인력 재배치할 계획 마련이 필요함

- 또한, '16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시 지적한 재단의 타유사기관에 비해 박사대비 석사 이하급 비중이 낮아 연구지원 업무 제고를 위해 연구보조인력(RA)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자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계약직 직원의 처우가 타 서울시 연구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재단의 노력이 있어왔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

<표 24> 서울복지재단 보조업무담당근로자 급여수준

구 분	급여수준	비 고
위촉연구원	월 240만원	식사비 월10만원 포함
행정보조원	월 195만원	

<표 25> 서울연구원 위촉연구원 급여수준

[단위 : 천원]

구 분	직 급	계약금액(월봉액, 주40시간 근로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석사급 위촉직원	위촉연구원	2,558	2,675	2,798	2,926	3,060	3,198	3,342
학사급 위촉직원	연구보조원	1,996	2,114	2,232	2,355	2,478	2,606	2,735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 개선 소요액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위촉연구원 및 비정규직원의 처우개선은 해당 연구원이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수가 다수이므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범도입지침('18.3.23)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재단이 비정규직 수를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19년에 적용되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3) 검토의견

- 복지재단의 '19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73억 8천 7백만원 증가한 334억 5천 9백만원으로 28.34% 증가하였음.
- 복지재단의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복지공동체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취약계층 금융복지사업 등 복지분야 공공서비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 공공서비스는 서울시 공조직 체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해야 할 업무 영역이라고 하겠으며, 전문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복지재단과 같은 출연기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임.
- 그러나 현재 복지업무의 상당 부분을 복지재단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는 단순히 예산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복지재단에 대한 실질적인 서울시의 감독기능이 미비한데 반해 재단의 복지업무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서울시와 재단간의 엄밀한 업무분담 및 협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복지재단에 위임한 업무에 대해 공조직은 권한은 있으나, 책임을 (복지재단으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민간으로의 회피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과도한 권한 위임의 타당성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재단의 조직진단을 통한 적재적소의 인력 재배치가 필요함.

- '16년 조직진단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재단이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의 중심에서 본연의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의 발전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현재의 단위 사업 중심의 분산 운영을 지양해야 함.
- 복지재단이 예산·인력·조직에 운영에 대한 전반적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며 복지재단의 지속적 양적 팽창 현상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지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 26> 서울연구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연 도	일 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원	사 유
계		113명	-
2017	2017. 8. 1.	35명	인사·보수·후생복지 분야 개선 계획에 따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2018	2018. 7. 1.	75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2018. 9. 1.	3명	

<표 27> 비정규직의 근무기간별 정규직 전환 현황

정규직 전환자	2017년 5월 후 입사전환자	1개월 미만자	1-3개월 미만자	3-6개월 미만자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
113명	113명	3명	2명	2명	4명	15명	87명

<표 28> 유사재단의 정책연구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

기 관	정규직인원 합계	연구인력	비 중	예 산 (백만원)	인당연구 예 산	기 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108	16 (관리자 4명 포함)	16	430	23.8	자체사업기준 (수탁사업은 당해연도에 확정 및 추진)
서울시50플러스재단	74	4	5.4	515	129	1인당 연간 연구과제 2.5개
서울연구원	216	141	65	38,676 (연구사업 7,489)	약 100	박사 75명기준
경기복지재단	35	17	49	10,951	40 (연구예산688)	18.11월기준

- 따라서, 재단의 대표도 새로 취임한 한 시점에서 재단의 질적 성장과 향후 재단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재단 내부 조직 및 업무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금번에 증액 요청한 출연금에 대하여도 시행할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내년 추가경정 예산 시에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나. 희망복지지원과

- 희망복지지원과는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목표로 하여 2018년 최종예산 2조 5,066억 3천 6백만원에서 11.65% 증가한 2조 7,986억 1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표 29〉 희망복지지원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8예산(A)	2019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10%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3,895,920	5,394,752	1,498,832	38.5%
정부양곡 할인 지원	20,690,367	22,758,000	2,067,633	1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7,163,200	19,184,056	2,020,856	11.8%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2,336,434	4,380,936	2,044,502	87.5%
의료급여사업	1,094,029,274	1,253,566,662	159,537,388	14.6%
긴급복지지원사업	17,337,000	24,678,000	7,341,000	42.3%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5,125,440	10,000,000	4,874,560	95.1%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745,800	1,009,000	263,200	35.3%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1,104,298	1,366,260	261,962	23.7%
고독사 예방사업	165,000	675,000	510,000	309.1%
□ 주요 삭감(10% 이상)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382,139	315,408	△66,731	△17.5%
□ 주요투자 및 신규사업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0	1,873,716	1,873,716	신규(공약)

가. 신규 사업

(1)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사업

i) 현황

- 위 사업은 시민이 중심인 돌봄 체계로의 혁신을 통해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SOS센터’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돌봄부담이 제로(Zero)인 서울을 구현을 목적으로 18억 7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사업의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9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치단체상보조금 16억 7천 6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7천 8백만원을 편성함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관련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5항

-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동 주민센터 내 돌봄통합창구인 돌봄SOS센터를 '19년 2개구 전동에 설치하며 돌봄매니저 선발 및 배치(동·구별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총52명)를 통하여 돌봄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시설·병원 입소 및 입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돌봄 사각지대를 위해 긴급 돌봄서비스 신설

(2,000가구)하여 일상 편의서비스(형광등 교체, 보일러수리 등)가 필요한 주민에게 사회적 기업 등을 활용한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으로 일상편의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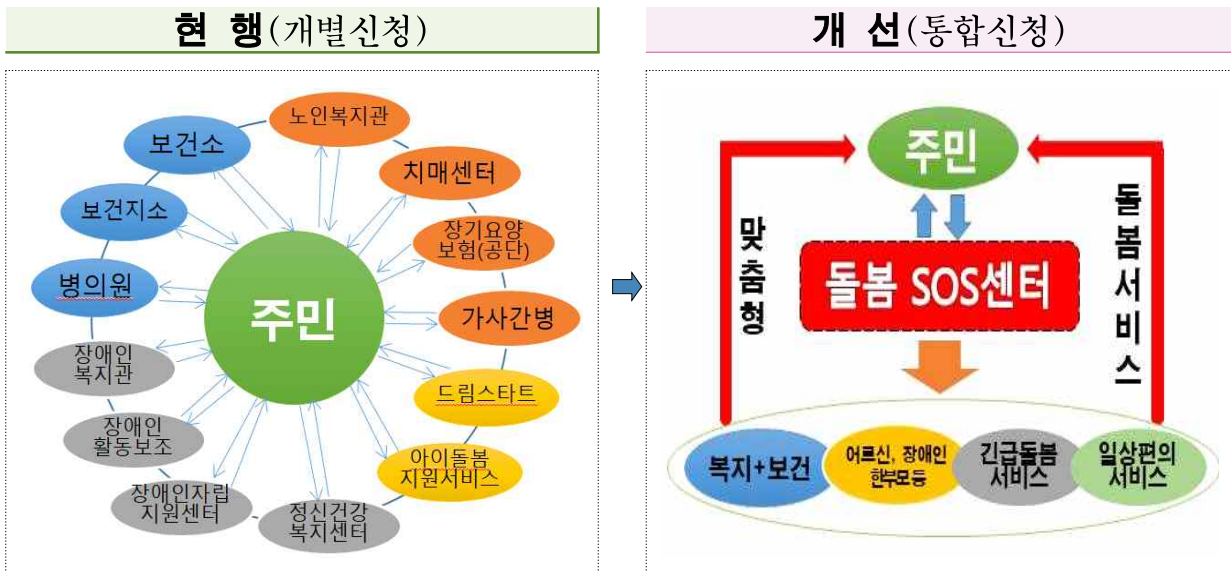


ii) 돌봄SOS센터 사업의 찾동사업간의 연계 및 문제점

- 본 사업의 목적이 시민들의 돌봄부담을 없애고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이고 체감적 변화를 돌봄영역을 통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동감하나, 기존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이 복지전달체계를 개선을 통해서도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단순히 공공부문의 인프라 확대만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집행부의 계획을 보면 시범 자치구 1개구를 정해서 공급의 필요량을 측정하는 연구·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25개 자치구마다의 돌봄유형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 역할 수행에 대해 ① ‘공공정책에 대한 참여’, ‘동 단위 구체적인 민관협업’ 등 핵심역할 수행 능력이 미흡하며, ②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에 대한 확립된 계획이 부족하여,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
- 또한, 치매위험군에 대한 찾동의 역할이 미미하여 돌봄 SOS센터를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건강보험공단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돌봄서비스 연계와 관련하여는 현재 찾동플래너가 방문상담 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야간의 서비스연계와 관련한 문제는 120재단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위 사업에 대한 합리적 추진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72시간 내 제공되는 서비스가 구체화되지 않는 등의 사업 전반적인 설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서울시내 돌봄과 관련한 사업도 이미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돌봄체계의 공백을 이유로 센터를 건립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먼저 찾동에서의 민원사항이나 다산콜센터의 민원사항 등을 유형별로 통계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돌봄SOS센터와 타사업 수행인력 비교

○ 돌봄SOS센터 복지공무원(돌봄매니저) vs 찾동 복지플래너 vs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구분	돌봄SOS센터 복지공무원('19년)	찾동 복지플래너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인력	26명 (동 24명 + 구 2명)	2,587명 (팀장 제외, '18년 기준)	112명 ('18년 정원 기준)
주요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돌봄사각지대 약 20만명)	65세·70세 도래 어르신, 빈곤위기 가정, 출산가정	복합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
고용형태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무지	동 돌봄SOS센터 구 돌봄지원단	동주민센터	구 희망복지지원단
재원	시비75% : 구비25%	시비75% : 구비25%	국비50%:시비 25%:구비 25%
시행시기	2019년 7월~	2015년	2012년

○ 돌봄SOS센터간호사(돌봄매니저) vs 찾동방문간호사 vs 통합방문간호사

구분	돌봄SOS센터간호사('19년)	찾동 방문간호사	통합 방문간호사
채용인력	26명 (동 24명 + 구 2명)	489명 (어르신 397명+우리아이 92명)	279명
방문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65세·70세 도래 어르신, 빈곤위기 가정, 출산가정	건강위험군·질환군 중 취약계층* *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고용형태	간호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무지	동 돌봄SOS센터 구 돌봄지원단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건소
재원	시비 75% *관련 규정 정비에 따라 변동 가능	시비 100%	국비 50%: 시비15%: 구비 35% 201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시행시기	2019년 7월~	2015년	2007년

※ 찾동·통합 방문간호사 고용형태 일원화(무기계약직) 및 동주민센터 배치로 통합운영추진 : 6개구('17) → 9개구('18) → 25개구 예정('19)

iii) 검토의견

- 돌봄SOS센터사업은 기존의 다산콜센터 및 120재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통합돌봄지원전달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운영 중인 찾동플래너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자의 업무 간 연계 내지 협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찾동 민원사항에서 보여지듯이 자치구별 충원계획 인력의 미충원 인력을 확인 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이며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체계 강화 및 업무의 명확한 재설계 및 방문간호사의 인력운용 체계 마련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 방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접근으로 보여짐
- 또한, 복지플래너 활동 중 위기 및 긴급상황 발견 시 조치사항을 추가마련하여 보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데 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사업의 운영근거의 타당성을 찾아볼 수 없음.
- 돌봄SOS센터가 필요하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촘촘히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에 구체화된 안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표 30> 신규 인력 충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517	513	1,213	470	321
사회복지직공무원	2,024	407	1,003	375	239
방문간호사	493	106	210	95	82

<표 31> 복지플래너 방문실적

(단위 : 가구)

구 분	시행 전(80개 동) (‘14.7~’15.6월)	찾동 시행 후(‘15.7~’18.6)			
		계	1차년도(80개 동) (‘15.7~’16.6월)	2차년도(283개 동) (‘16.7~’17.6)	3차년도(342개 동) (‘17.7~’18.6)
복지플래너 방문건수	42,254 (동당 44건/월)	587,259 (동당 72건/월)	76,892 (동당 80건/월)	232,133 (동당 68건/월)	278,234 (동당 68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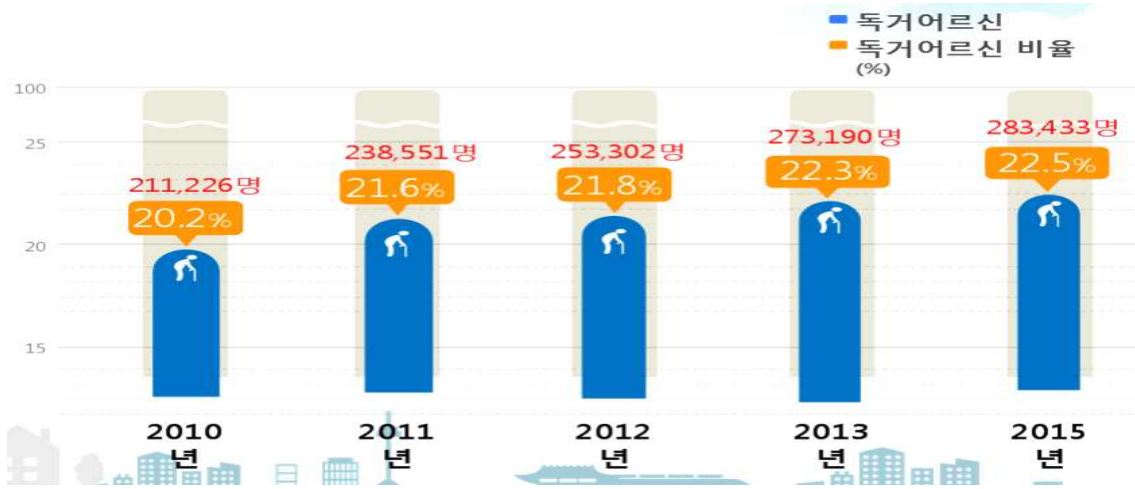
나. 주요 증감사업

(1) 고독사 예방 사업

i) 현황

- 위 사업은 고령화 심화, 부모부양 인식 변화 등으로 독거노인 규모 증가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모부양 인식 및 가족 가치관은 소가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시민과 지역구성원이 함께하는 새로운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적 우정 확산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모임 등 사회적 관계형성,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하기 위해 6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집행부는 고독사 실태파악 등 연구(‘16년) 및 고립가구 관계 맺기 시범사업(3개동) 운영(‘17년)을 추진하였고 고독사 예방대책 T/F운영(‘17.9월~’18.1월) 및 토론회 개최(‘18.1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자치구 시행(‘18.4월)하였음.

<그림 1> 서울시 독거어르신 현황



※ 2016년 288,599명, 2017년 302,824명, 2019년 9월 현재 317,155명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ii) 고독사 관련 현안 및 문제점

- 외부 지원을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실태조사 및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은 '15년 32천명, '16년 25천명으로 여전히 존재
 - '17년 독거노인 고독사 24건 중 10건이 돌봄을 거부한 은둔형 노인으로 복지 사각지대 대응 필요

※ '17.5.4.서울 은평구에서 서비스 거부로 인한 고독사 발생

- 돌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요보호 독거노인 급증, 서비스 거부자의 고독사 발생 등 돌봄 사각지대 지속 발생함
 - 취약 독거노인 수 대비 공공·민간 돌봄 제공이 부족*하고, 은둔 독거노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은 소규모 시범사업 수준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18년 은둔·자살 고위험 독거노인 5천명 발굴·지원

- 현 돌봄 서비스는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중심으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에 맞는 지원은 부족

-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대 간 소통, 이동권 보장, 주거환경 개선 등 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 대응을 위한 돌봄서비스 다양화 시급
- 고령화와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 진입을 예방·지연하기 위한 사전예방 지원대책 필요
- 독거노인 실태 분석과 연구가 부족하고, 종사자의 역량강화·처우개선 등 돌봄 인프라 강화 필요
-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여 이·퇴직이 잦고, 역량강화 기회가 연 1회로 한정되어 서비스 품질 개선이 어려움
-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서비스관리자 2년4개월, 생활관리사 4년, 응급관리요원 1년6개월
- 업무의 고육성과 분절성이 강조되고, 관련 부서와 경쟁 때문에 상호간의 협조 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복지 관련한 행정조직과 산하 기관은 확대하지만 유사 기능의 중복성이 커지고, 독립성 강조로 인하여 칸막이 효과 발생으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공중심의 관주도형 전달체계는 사각지대 접근의 제약성이 심하여 예산의 투입과 제도적인 행정절차만으로는 효율성이 제약됨.
-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상당히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관주도의 행정절차와 법 규정만으로는 발굴하여 대응하기 어려움.
- 서울시는 1인 가구에 대한 정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로 독거 어르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독거어르신의 소득수준, 생활실

태 등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고독사 의심 사례 발생 현황을 보면 종로구, 중구, 광진구,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관악구가 상당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바, 대부분 밀집 주거지로서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보증금이 없는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음.
- 종로구와 중구의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관악구, 금천구, 광진구의 다가구 주택, 노원구 아파트와 은평구 다세대 주택 지역의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표 32> 서울시 자치구별 독거노인 현황

(단위: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합 계	288,599	303,824	317,155
종로구	7,074	7,394	8,616
중구	5,528	5,725	5,846
용산구	8,520	8,664	8,748
성동구	9,025	9,508	10,197
광진구	8,860	9,711	10,233
동대문구	12,570	15,355	15,522
중랑구	14,184	12,674	14,995
성북구	13,643	14,082	14,377
강북구	13,760	14,759	15,359
도봉구	10,601	11,328	11,865
노원구	17,944	18,895	20,064
은평구	16,628	17,971	18,486
서대문구	10,482	10,980	11,210
마포구	10,268	10,451	10,753
양천구	10,178	12,031	11,893
강서구	15,548	16,226	16,226
구로구	11,732	11,693	13,189
금천구	8,070	8,552	9,014
영등포구	13,239	13,401	13,731
동작구	11,751	11,740	13,178
관악구	15,655	16,490	16,717
서초구	8,811	9,189	9,395
강남구	11,218	11,396	11,672
송파구	12,081	13,554	13,204
강동구	11,229	12,055	12,665

iii) 검토의견

- 고독사예방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되어지지만, 사업 추진체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업무분담 및 연계방안, 집행부의 책임관리 기관 설립 유무(예를 들어 고독사 위험자 지원센터 설립 등),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 운영방안 및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근거가 된 예산안을 편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고독사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있을 뿐, 그 원인분석과 문제 해결방안 및 정책 수립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 어려움.
- 사회보장 빅데이터와 다양한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취약가구의 소득·지출 등 생활실태와 복지사각지대 위험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각한 사회적 고립 및 관계 단절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1인 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위기상황에 놓인 1인 취약가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며, 사회보장 분야 빅데이터와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취약가구 유형별 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정보 확보 필요함

(2)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지원 사업

i) 현황

-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지원 사업’은 급증하는 복지재정 수요와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공헌본부 운영을 통

해 민간자원의 효율적 발굴 및 복지시설 연계사업 지원하고 사회공헌 상생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8년도에 예산 1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9년도엔 사업자체가 폐지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위 사업을 매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3에 의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 성과 및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 지원』 사업은 '13년부터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지적도 받지 않았음

ii) 사업 쟁점 현안 및 문제점

○'18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폐지 의견을 내었고, 이에 따라 예산과에서 폐지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성과평가 : 폐지
 - ⇒ 보건복지부 등 사업의 유사·중복의 성격이 강하고, 민간네트워크 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 고민 필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의 결과(잠정) : 폐지
 - ⇒ 보건복지부 등 사업의 유사·중복의 성격이 강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사업으로 추진 필요

- 하지만, 보건복지부 유사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전국단위로 주로 대기업 위주로 모금회 자체사업이나, 서울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한 사회공헌 경험이 없는 중견·중소기업 위주의 시·도 단위의 법정사무¹⁾임
- 사회복지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市 예산 한계가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취업률 하락 등에 따라 취약 계층 복지수요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現 수준의 예산지원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자원으로 저소득층 전반까지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투입되는 예산액 대비 민간자원 발굴 실적 우수하며 '17년 기준, 예산 83백만원을 투입하여 민간자원 91억원 발굴 및 연계 지원하였으며, 사업 폐지 시,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던 민간자원 91억원('17년 기준)이 사라지게 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효율성(A/B)	128배	110배	37배
민간자원 발굴(A)	9,711	9,173	4,064
예산액(B)	76	83	111
인건비	71	73	81
사업비	5	10	30

※ '18년 실적 : 민간자원의 경우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최종실적은 전년 수준 예상

1)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사회복지자원과 연계·협력'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시·도 법정사무임

- 아울러 사업 폐지 시, 사회공헌 운용인력 4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기업사회공헌 민간 경력직으로 채용한 市 공무원의 업무 추진에 한계 발생이 예상되며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예산이 없고 모두 보조금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단절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가치) 이행 환경 역행의 우려가 예상됨

iii) 검토의견

- 집행부의 주장대로 ‘민간사회공헌사업 개발지원사업’이 예산대비 민간자원 발굴이 우수하고 본 사업의 폐지로 인한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단절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역행이 우려된다면 집행부 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전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였음.
- 또한, 사업의 폐지가 예상되었을 바, 해당과의 적극적 소명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연례적, 반복적으로 예산 확보가 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운용인력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자성이 필요해 보임.
- 따라서, 타 사업의 인력보강 등의 방법이 아닌 우수한 사업에 대한 예산수립 등의 적극적 태도가 필요해 보이며 정당한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복지과는 초고령 시대 대비한 어르신 맞춤형 복지 실현 등을 목표로 하여 2018년 최종예산 1조 8,541억 1천 7백만원에서 21.38% 증액된 2조 2,610억 8천 7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표 33〉 어르신복지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8예산(A)	2019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10%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163,871,503	180,608,243	16,736,740	10.2%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12,424,250	15,710,000	3,285,750	26.4%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122,530	170,000	47,470	38.7%
기초연금 지급	1,550,678,577	1,954,972,988	404,294,411	26.1%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928,740	1,185,276	256,536	27.6%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기본	10,798,176	14,646,210	3,848,034	35.6%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종합	7,381,500	8,302,500	921,000	12.5%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사회관계활성화	502,500	739,500	237,000	47.2%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350,000	500,000	150,000	42.9%
□ 주요 삭감(10% 이상)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6,996,448	5,803,695	△1,192,753	△17.0%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8,875,561	5,732,832	△3,142,729	△35.4%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2,461,820	2,075,526	△386,294	△15.7%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단기	176,061	99,000	△77,061	△43.8%
시립묘지 유지관리(5개소)	1,170,000	550,000	△620,000	△53.0%
□ 주요투자 및 신규사업				
용머리 자연장지 조성	0	921,000	921,000	신규(국비)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350,000	500,000	150,000	42.9%(투자)

나. 주요 증감사업

(1)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i) 현황

- 위 사업은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여 어르신 건강과 안전 지원,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158억 7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 복지욕구에의 대응 및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등 장기요양의 가족부양 한계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 강화하고 노인부양비의 급증에 대비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충 필요한 실정임.

<그림 3> 연도별 서울시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 서울시 통계를 살펴보면, '17년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13.8%에 해당하나, '25년에는 19.1%, '30년도에는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23.2%에 해당하여 노년부양비가 현재 18.4%의 약 2배인 35.4%로 증가함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대한 요양수요 대비 미흡한 요양서비스공급 확대 필요가 요구됨

구분	'10년	12년	'14년	'17년	'20년(추계)	'25년(추계)	'30년(추계)
전체인구	10,575,447	10,442,426	10,369,593	9,857,426	9,761,875	9,689,738	9,564,220
노인인구 (인구대비%)	1,007,572 (9.5%)	1,110,995 (10.7%)	1,221,616 (11.8%)	1,359,901 (13.8%)	1,468,937 (15.1%)	1,852,938 (19.1%)	2,217,404 (23.2%)
노년부양비	12.4%	13.9%	15.5%	18.4%	20.5%	24.6%	35.4%

※ 출처: 서울통계,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노인수

ii) 요양수요에 대한 데이케어센터의 필요성 및 현안과제

- 데이케어센터의 정원 충족률은 공공운영시설(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95%, 민간운영시설(개인, 영리법인 등) 75%로서 민간운영시설의 정원 충족율이 공공운영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17년 12월말 기준 데이케어센터 대기인원 1,195명의 93.8%(1,121명)가 공공운영시설(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입소대기자로 공공기관 운영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운영주체별(공공/민간) 정원 충족률



- 시설별 일부 중복 대기자를 감안하더라도 데이케어센터 대기인원 1,195명 기준으로 시설의 추가 확충(정원 20명 기준시 60개소)이 필요(마포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대기자가 특히 많음)하며, 우수한 공공운영시설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대기자의 대부분이 공공운영시설에 편중되어 있어 공공운영시설 확충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수준 제고가 필요함.

- 재가급여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확대를 위하여 데이케어센터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므로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 필요하며 민간시설은 서울형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정원충족률을 높이고, 민간의 신규시설 확충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데이케어센터’(이하 ‘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며 같은법 제39조에 의거 관할 구청에 신고·설치하는 이용시설로서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호 따른 사회복지시설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또는 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이하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 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각 시설에 배부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울형 인증을 받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시설은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 함.
- 그러나 현재 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에서 평가 및 인증을 서울시복지재단에 위임하여 운영중이고, 복지본부 내 해당부서의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서울시내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복지재단의 소수의 인원만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 인증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단순히 서류 및 관례적, 전례적 평가·인증 및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표 34] 동작구 위탁 데이케어센터 인건비 부적절 지급 사례

부적절 항목	내 용
① 직 급	직급을 임의로 올린 행위 (예, 2급→1급, 5급→ 3급)
② 호 봉	규정에 없는 경력을 올리거나 임의로 호봉을 정함 (예, 사회복지 시설경력 없는 3호봉 → 19호봉 등)
③ 제 수 당	직급과 호봉 관련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 라인’ 규정에 따른 제수당 초과 지급
④ 처우개선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 항목을 센터장과 특정 직원에게 지급
⑤ 직책수당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의거 관리자 수당을 수령하면서 직책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음

자료 : ‘3개 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iii) 검토의견

- 행정의 추구해야 할 제1목적이 시민안전이고, 다음 목적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담당부서의 조직인력 및 업무현황을 조사한 수 인력 보강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인증기준의 지표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구성하여 수탁법인의 회계상의 부정이 사전에 예방해야하며 동작구 위탁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회계부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마련이 시급함.
- 서울시 담당부서는 자치구와 긴밀한 업무 네트워크를 만들어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경우 해당 법인이 서울시 복지시설을 수탁 받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2)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

- 위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및 거동불편 어르신을 양로 및 요양시설에 보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 도모에 기여하기 목적으로 전년 대비 11억 9천 2백만원 감액된 58억 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사업개요

- ① 사업대상시설 : 81개소(양로7, 요양 74)
 - 양로시설 : 7개소(정원 422명, 현원 377명, 종사자 102명)
 - 요양시설 : 74개소(정원 5,510명, 현원 5,420명)
 - 등급외자 : 99명(시립 54, 법인 45), 식비지원 기초수급자 : 1,708명
- ② 사업기간 : 2018.1~12월
- ③ 양로시설
 - 종사자 인건비 지원
 - ※ 지원기준 : 2017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반영
 - ※ 15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복지부 방침에 따라 5개소 지원에서 7개소 지원으로 변동)
 - 관리운영비 지원
 - 프로그램비 지원
 - 기타 경비 : 춘계 부식비 및 김장비(14천원/1인)
 - ※ 재원분담비율 :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50% / 기타경비 시비 100%
- ③ 노인요양시설
 - 지원대상 : 17년 현재 74개소 지원(총 533개소 중 시립,구립,비영리법인 운영시설에서 수급자 보호시)
 - 지원내용
 - 요양보험제도 시행('08. 7월) 이전 입소 등급외자에게 3등급 요양급여지원
 -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비급여 항목(식비 등), 시립시설 추가 지원 종사자 인건비

·노인학대피해 일시보호 비용 지원

④ 노인요양시설 인증

- 지원대상 :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지원내용 : 환경개선비, 대체인력인건비, 기타 운영지원 등

-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시설 종사자가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종사자의 업무 만족도와 노동 환경 보장이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으로 직결되는 휴먼서비스라고 할 것임.
- 그러나 2015년 국고전환된 장애인 거주시설,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인건비 격차가 상당한 액수로 발생하여 상대적인 사기저하와 이직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표 35> 연도별 양로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현황

구분	서울시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
2015년	'14년 대비 3.25% 인상	동결
2016년	'15년 대비 4.78% 인상	동결
2017년	'16년 대비 5.27% 인상	'14년 대비 0.8% 인상
2018년	'17년 대비 4.28% 인상	동결(예정)

- 2015년 이전에는 국고지원시설과 서울시 산하 지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시비(100%)로 종사자 수당 및 처우 개선비를 일괄하여 지원하였으나, 2015년 국고환원된 3개 유형(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국고환원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건비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 반면에 국고지원시설(노숙인생활시설, 지역자활시설 등 11개 유형, 990개소)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생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월 250천원~월 290천원) 또는 처우개선비(월220천원~월290천원)를 지급하고 있음.
- 중앙정부(보건복지부)는 국고전환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환경 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집행부는 국고환원되었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의 격차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수당을 지급할 경우 서울시 국조지원 종사자 복지 수당 산출기준(5년 미만 25만원, 5년 이상 29만원 기준 적용)을 감안하고, 시립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여 기존의 1인당 처우수당비 3만원 내외를 7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적용할 경우, 9억 7천 7백만원의 추가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년종합복지관이 설치한 요양시설 종사자는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와 발생하는 임금 격차로 인해 요양시설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등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복지수요자(어르신)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 국고환원 조치로 인하여 생활시설 입소자나 종사자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고환원으로 인한 입소자와 종사자의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인생이모작지원과

- 인생이모작지원과는 중장년층의 은퇴 후 인생 제2막 설계지원을 목표로 하여 전년대비 540억 7천 4백만원(21.81%) 증액된 3,020억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36〉 인생이모작지원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8예산(A)	2019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10% 이상)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24,473,397	28,992,297	4,518,900	18.5%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2,140,324	13,787,948	1,647,624	13.6%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712,246	2,382,026	669,780	39.1%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12,115,559	158,309,982	46,194,423	41.2%
보람일자리 사업	8,906,000	10,916,000	2,010,000	22.6%
50+센터 확충 및 운영	4,081,233	4,830,520	749,287	18.4%
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숙)	3,620,000	4,436,700	816,700	22.6%
□ 주요 삭감(10% 이상)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10,054,083	4,877,827	△5,176,256	△51.5%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1,107,224	707,872	△399,352	△36.1%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문화체육관광부 지원)	1,324,453	1,154,946	△169,507	△12.8%
□ 주요투자 및 신규사업				
50+캠퍼스 확충	7,169,443	18,754,442	11,584,999	161.6% (투자)

가. 주요 증감사업

(1)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i) 현황

- 위 사업은 건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일자리 마련 및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등을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소득보전을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461억 9천 4백만원이 증액된 1,627억 4천 2백만원이 예산 편성됨.
- 보건복지부 사전 안내에 따른 일자리 사업량 확대 반영되어 어르신 일자리 사업량이 22.8% 증가(2018년 66,649명 → 2019년 81,570명)됨

<표 37> 연도별 어르신일자리 집행실적(시직속사업)

(단위 : 개, 천원, %)

연 도	배정일자리	누적참여자수	예 산	집행실적	집행률	비고
2016	1,925	1,864	2,995,851	2,853,804	95.0	12개사업 8개 기관
2017	1,313	1,548	3,237,000	3,156,935	97.5	19개 사업 15개 기관
2018	1,355	1,337	3,620,000	3,328,873	92.0	14개 사업 10개기관

ii)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국비 내시 반영 비율 변경 및 일자리 질 문제

-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당초 예산안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44억 3천 7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1,583억 5백만원이었으나 보건복지부 가내시 확정 예산액이 사회복지사업보조예산 44억 1천 3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1,395억 8천 5백만원으로 감소정되어 차액 187억 4천 3백만원의 예산 차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 조정 심의 가 필요함.
- 국·시비 매칭 사업의 특성상 매칭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우나, 예산안 편성 전에 복지부 가내시액 확정을 통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 예산 편성의지가 요구됨.

<표 38> 2019년 어르신 일자리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연 번	사 업 명	2018년 예산현액 (A)	2019년 예산편성	2019년 가내시 현황 (B)	전년대비 가내시 증감(%) (B-A)/A
	계	(×53,029,335) 113,735,559	(×74,351,489) 162,746,682	(×65,747,969) 144,003,567	(×23.9) 26.6
1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51,743,335) 110,115,559	(×73,020,479) 158,309,982	(×64,423,996) 139,590,325	(×24.5) 26.7
	사무관리비	5,000	5,000	5,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51,743,335) 110,110,559	(×73,020,479) 158,304,982	(×64,423,996) 139,585,325	(×24.5) 26.7
2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 업(시직속)	(×1,086,000) 3,620,000	(×1,331,010) 4,436,700	(×1,323,973) 4,413,242	(×21.9) 21.9

<표 39> 2019년 현 예산안 가내시 차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 체	자 치 구	시 직 속
2019년 예산(안)	162,741,682	158,304,982	4,436,700
2019년 가내시	143,998,567	139,585,325	4,413,242
감조정	18,743,115	18,719,657	23,458

* 2019년 서울시 예산안 확정후 복지부 가내시 통보로 예산안에 미반영(의회 심사과정에 조정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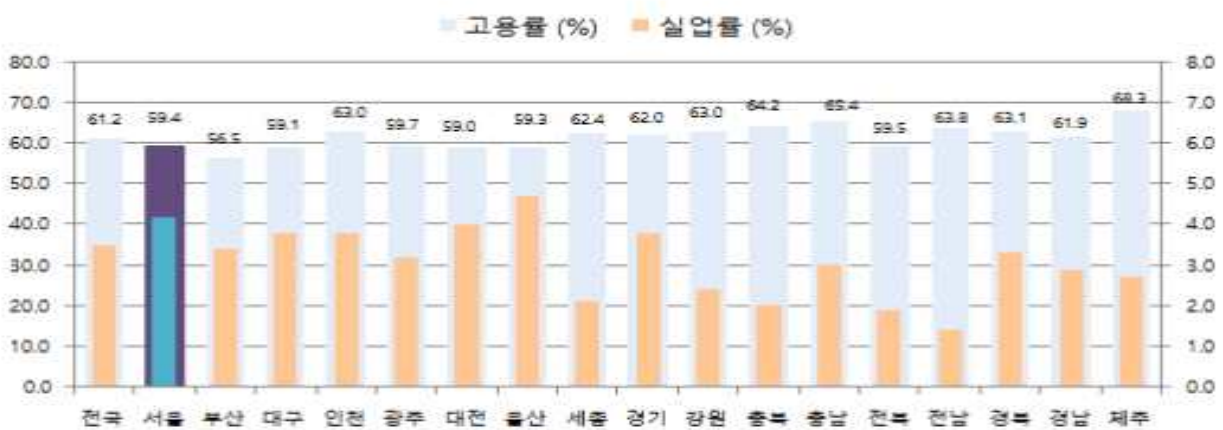
-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경우 보수 수준과 기간 등 근로여건의 개선없이 일자리 수 증가 위주로 확대된 경향이 보이며, 예산의 대부분은 참여노인의 직접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인력 투입과 참여노인 교육 등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서울시 연령별 고용률 추이(2007~2017)



- 위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어르신 고용률 추이는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서울시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실업률이 높은 실정인데 그 요인 중에 노인 고용률이 낮은 것도 고려해 볼 사안임.

광역자치단체별 고용률 및 실업률



- 그간 중앙정부의 기조인 노인일자리 물량의 우선적 확대에 따라 질적 측면 개선이 미흡하며 단순 공공근로 위주의 사업 확산과 다른 사업과의 중복 문제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뿐 아니라 생산적 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의 만족도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정 일자리 개발 및 사업 발굴이 시급해 보임.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154명 당 1명의 인력을 채용·운영할 수 있게 전담 인력¹⁾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치구 내 수행기관의 양적 충족을 담보되는 것이 아니며,
- 시 및 자치구별로 적정 양의 수행기관(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그로인해 수행기관(인프라)의 수 및 규모 등 그 기반이 건설한지 여부를 진단

1) 수행기관전담인력이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이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 인력임

하여 양적 관리 및 실태파악을 통한 중·장기 관점의 서울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iii) 검토의견

-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인구수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나 다만 양질의 적정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신규 사업발굴이 필요함
-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활성화 및 사업관리 강화, 전담 인력 처우 개선, 수행기관 평가 강화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부와 국비 매칭사업의 특성상 예산의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으나 금번처럼 과다 추계를 할 경우 필요한 다른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 내지 절감되는 사안들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복지부와 사업량 및 예산추계와 관련한 사전 매칭비율 확정 등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어짐.

(2)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 현황

-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문화·여가생활 지원·상담 및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년층 관련 시설 지원 및 종사자 교육,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등을 목적으로 전년도 대비 8억 8천만원 증액된 144억 6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 50+재단은 '19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50+세대 사회적 역할 강화 등 시책 신규 및 확대사업 추진 및 50+캠퍼스 3개소 운영비 및 인건비 인상률 적용에 따른 증액분으로 사무관리비 4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백만원, 정책사업비 82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함.

2) 50+재단 사업 전반적 검토

i) 보람일자리사업 관련 문제점

- '보람일자리 사업'의 참여 자격 요건 중 연령을 보면, 2016년 만 50세~64세, 2017년에는 3살을 더 늘린 만 50세~67세로 정하고 있음.
- 2017년 참여대상 연령을 67세까지 늘렸지만, 65세 이상 참여자 수는 전체 553명 중 38명으로 6.9%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연구 등 관련 후속 조치가 전무함 실정임.

<표 40> 2017년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 (사업별)

사업명	성별		연령별(세)				합계
	남	여	50~54	55~59	60~64	65 이상	
50+모더레이터	26	39	16	18	30	1	65
50+컨설턴트	32	26	12	24	21	1	58
50+NPO펠로우	15	11	6	5	12	3	26
50+취업지원관	41	32	21	25	23	4	73
학교안전관리지원단	34	16	0	5	34	11	50
우리동네맥가이버	27	13	6	11	20	3	40
IT지원단	15	7	3	13	6	0	22
한지붕세대공감	4	16	6	9	5	0	20

코디네이터							
쪽방상담소지원단	4	10	4	1	8	1	14
50+기자단	7	8	8	4	2	1	15
행복도시락 나눔지원단	12	15	6	10	9	2	27
장애인직업 재활지원단	32	64	23	30	34	9	96
청소년시설 50+지원단	13	34	22	12	11	2	47
계	262	291	133	167	215	38	553
비율	47.4%	52.6%	24.0%	30.2%	38.9%	6.9%	`

(※출처: 2018년 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노인의 기준 나이는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7% 이상)에 진입한 지 18년 만인 지난 해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했고, 8년 뒤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전망이다.
-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보람일자리’ 참여대상 연령을 67세까지로 늘린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의 참여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참여대상 연령을 더 상향 조정할 필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연령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ii) 운영사업 전반의 집행률 저조 및 불용액 관련 문제점

서울시 연령별 고용률 추이(2007~2017)



- 50+재단의 운영사업의 집행률이 평균 57%로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며, 모든 예산 집행이 10월~12월에 편중되어 있는 등 연례적, 관행적 예산 집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50+쌍크탱크로서 연구 결과를 실제 사업에 반영을 위해 2019년 예산 계획 전 9월~10월에는 완성되었어야 함에서 불구하고 50+ 세대이슈 발굴 및 정책연구는 11월~12월에 전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에 대한 자구방안 마련이 필요함.
- “모델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사업” 불용률과 관련하여 2017년 집행률 85%이고 2018년 현재 집행률 34%로 저조한 실정임. 또한,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함

iii) 용역계약 관련한 부적정 문제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17년 서울시50플러스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대행 용역을 체결한 후 1차 조달청 제한경쟁 공고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추가로 수의 계약2)을 체결하였음. 추가 수의계약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함.
- 조달청 공고에서 제안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분리 발주에 해당할 뿐 아니라 우선 계약에서 부족한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하며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내 감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계약명	구분	공고 번호	입찰 번호	낙찰 번호	계약 번호	공고 기간	입찰 기간	계약일	입찰가격 및 선정기준	입찰 참가업체	계약업체	예산 금액 (천원)	계약 금액 (천원)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 사유
2017 서울시 50플러스 페스티벌 대행 용역	용역	g 2 b	제한 경쟁	협상	총액	22 일	4일	17.10.16	제안평가 후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	(주)메트로 커뮤니티 케어 5개	(주)메트로 커뮤니티 케어	160,000	156,800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하여 실적제한
2017 서울시 50플러스 페스티벌 대행 용역 추가계약	용역	수의 시 단			수의 계약			17.10.20			(주)메트로 커뮤니티 케어	50,000	50,00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 2017 서울시50플러스 페스티벌 대행 용역으로 2017.10.16. 1건, 2017.10.20.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구분	구체적 범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2)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1건 총 2건의 용역을 계약하였음. 2017.10.16. 계약한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1억 6천만원으로 조달청 전자입찰(제한경쟁)을 통해 진행하여 (주)메트로커뮤니케이션즈를 선정하였으나, 4일 후 동일 업체에 대해 5천만원 상당의 추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음.

- 이는 처음 공고에서 추정금액을 2억 1천만원 으로 산정하여 공개입찰을 진행 하였어야 하며, 업체를 선정한 후 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한 것은 부적절함. 만일 계약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다시 공개입찰을 진행하거나 이전 계약을 취소하고 추정금액을 정정하여 재공고를 진행하였어야 함.
- 용역계약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명백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함.

iv) 채용 관련 부적정 문제

- 서울50플러스재단은 ‘블라인드 기반 채용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 및 ‘채용절차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신규직원 고용 시 채용대행 용역을 하고 있음.
 - 2018년에는 경영기획 5급, 정책개발 4급(2인), 홍보협력 5급, 일자리사업본부 2급, 일자리사업본부 3급, 일자리사업본부 4급, 일자리사업본부 6급, 일자리지원 5급 등 총 9명 (실제 합격자 8인 / 합격자 없음 1인)을 채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잡플러스와 3,913만 8,000원의 계약을 함.
- 서울50플러스재단은 2016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채용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음.
- 채용대행 용역을 동일업체와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 서윤기의원 요구자료 「70. 재단과 캠퍼스 및 센터의 공개경쟁입찰 내역 및 공고기간, 공고문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동일한 업체와 채용

대행 용역을 진행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바, 수의계약 현황 중 ‘2016년 제2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직원 채용대행 서비스 용역’, ‘서울시50플러스 재단 직원 채용대행 서비스 용역’,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직원 채용대행 서비스 용역’, 2017년 ‘채용대행서비스’, ‘채용대행서비스’는 모두 hr맨파워 라는 기업이 수행했음.

- 또, 2017년 ‘서울시50+재단 직원 채용 대행서비스 용역’, 및 ‘서울시50+ 재단 직원채용 대행서비스’는 (주)코어피플에서 진행했음.
- 각각의 채용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지 알 수 없으나 자료가 제출된 18년도의 채용관련 자료와 동일한 규모라고 한다면 hr맨파워는 수의계약으로 2년간 약 2억(4,000만원*5건), 코어피플은 약 8천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으며, 이 모든 계약 건이 수의계약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의 어떤 절차 및 기준을 통해 수의계약이 됐는지 명확하지 않는 등의 채용과 관련한 문제가 존재함.
- 또한, 한 기업과 5회 또는 2회의 채용 사업을 진행한 것은 ‘블라인드 기반 채용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 및 ‘채용절차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으며 채용 비리에 대한 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임.

3) 검토의견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정책연구관련되어 기능 활성화 및 강화, 연구과제 수행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전년대비 예산 증감현황(2017-2018)을 살펴보면, 50+세대 이슈 발굴 및 정책연구 예산이 감소하였고, 이는 50+재단이 정책연구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됨
- 이는 <표 41>의 유사성격의 출현기관의 연구인력 수와 비교하여 50+재단의

연구인력 및 연구원 수가 적는데 반하여 50+재단에 50+세대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에 기인한다고 보여지는 바, 향후 잠재적 50+세대의 역할강화를 위하여 연구인력의 확보가 시급해 보임.

- 50+재단이 '19년도에 증액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50+세대의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존재하나, 50+재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특정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50+세대 향후 잠재적 서울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연구의 기대효과가 연구의 타당성 등의 문제보다 더 크다고 보여지는 바, 재단의 서울시의 50+세대에 대한 향후 정책적 방향에 기여를 볼 때 해당 증액 요청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50+재단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급한 문제가 조직 및 정책 전반에 대한 재편성이며 이에 대하여 50+재단은 현재 조직진단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조직 재편성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및 정책방향 설정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며,
- 재단의 모호한 정체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관련 소명자료를 통해 '19년도에 서울시 50+세대를 위한 집행부와 정책적 협업 및 50+캠퍼스, 50+센터와 일관된 사업을 통한 서울시 중·장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며, 단순히 복지본부와의 정책 협업뿐 아니라 서울시정 전반의 50+의 역할 및 정책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따라서 50+재단은 복지본부 산하 타 기관과 달리 재단 설립 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또 특정계층 연구 및 사업시행 재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액 증액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단, 50+재단은 향후 재단의 중장기 운영방향과 업무수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재단의 예산사업과 출연금 집행에 대하여도 다각적 검토와 함

<표 41> 유사출현기관 연구인력 및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기 관	정규직인원 합계	연구인력	비 중	예 산 (백만원)	인당연구 예 산	기 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108	16 (관리자 4명 포함)	16	430	23.8	자체사업기준 (수탁사업은 당해연도에 확정 및 추진)
서울시50플러스재단	74	4	5.4	515	129	1인당 연간 연구과제 2.5개
서울연구원	216	141	65	38,676 (연구사업 7,489)	약 100	박사 75명기준
경기복지재단	35	17	49	10,951	40 (연구예산688)	18.11월기준

<표 42> 2019년도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증액 출현안(신규 및 확대 사업안)

연번	사 업 명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1 (1순위)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0+세대 역할 강화 사업	209	신규
2 (2순위)	50+세대 사회문제 해결역량 강화 사업	55	신규
3 (3순위)	서울형 50+ 펠로우십 확대	566	확대

계 조직 재정립을 반드시 수립해야하며,

- 현재 재단에서 각 캠퍼스의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체계를 재단에서 총괄할 수 있는 구조로 체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50+재단, 50+캠퍼스 및 50+센터가 하나의 전달체계 하에서 같은 기조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필요해 보이며, 현재의 자치구의 지도·감독하에 있는 50+센터에 대하여도 서울시 또는 50+재단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토록 조례의 개정 또는 재단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을 목표로 하여 2018년 최종예산 2,091억 9천 4백만원에서 9.79% 증가된 2,296억 7천 7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표 43〉 장애인복지정책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8예산(A)	2019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10% 이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0,789,495	14,022,078	3,232,583	30.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7,218,732	19,206,231	1,987,499	11.5%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1,263,400	1,390,490	127,090	10.1%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865,565	1,292,677	427,112	49.3%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3,551,346	4,721,586	1,170,240	33.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154,000	420,000	266,000	172.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6,080,000	9,864,000	3,784,000	62.2%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510,000	790,000	280,000	54.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239,814	1,377,188	137,374	11.1%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 일자리	1,584,065	2,079,705	495,640	31.3%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	2,913,768	3,971,277	1,057,509	36.3%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	9,847,881	12,535,852	2,687,971	27.3%
장애인 일자리 지원-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185,926	517,851	331,925	178.5%
□ 주요 삭감(10% 이상)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1,256,992	985,077	△271,915	△21.6%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526,886	329,933	△196,953	△37.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547,244	625,234	△922,010	△59.6%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510,800	1,285,800	△225,000	△14.9%
□ 주요투자 및 신규사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0	124,000	124,000	신규(국비)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0	960,124	960,124	신규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0	1,865,000	1,865,000	투자

가. 신규 사업

(1)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사업

- 위 사업은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실태 및 복지 서비스 욕구를 파악해서 서울시 중장기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신규사업으로서 9억 8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개요는 다음 표와 같음.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예방 및 구제로 행복추구권 구현
-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② 사업기간 : 2019. 1~12월

③ 조사대상 : 중증장애인(지체, 뇌병변)

④ 조사내용 : 복지욕구, 생활실태 등 개인특성 및 복지욕구, 인권침해, 학대 등

⑤ 인적사항 : 장애유형, 등급, 발생식, 주된 장애인인, 중복 장애여부,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보조기기 활용 여부 등

⑥ 생활실태 : 복지서비스, 보건의료·건강, 지원,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문화·여가활동, 주거 등

⑦ 조사방법 :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애인 거주지 방문하여 실태조사,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대상 장애인의 인권침해 등 안전 유무 확인 및 설문조사 실시

- 중증장애인 실태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중증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전수조사사업(이하 '전수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전수조사사업의 배경에는 중증장애인이 범죄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회 여론의 비판과 우려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집행부가 마련한 조사방법을 보면,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애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며, 대상 장애인의 인권 침해 등 안전 유무를 확인하는 바, 학대 의심 장애인을 발견할 경우에는 장애인인권센터에 통보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식임.
- 검토하건데, 전수조사사업은 중증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생활실태,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취약계층에 속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외부와 단절된 사회적 고립단계에 처한 경우가 상당한 바, 전수조사 응답자 보상품을 활용하여 조사를 원활하게 하는 소극적 방식으로는 고립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발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사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 운영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에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플랫폼 설치 사업(4억원)과 가활센터 조성 타당성 용역(1억원)’을 위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가활(可活): 발달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비용을 줄이고, 현재 장애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개념임.

- 가활센터 플랫폼은 발달장애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 관리,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의 열람·대여·복사할 수 있는 플랫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바, 이용 대상은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 가족 및 발달장애 분야 종사자, 전문가 등 40,000명 이상으로 추산됨.
- 가활센터 플랫폼의 사업내용은 크게 ①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오프라인 콘텐츠 수집 및 공유 ② 발달장애 전용 콘텐츠 제작 ③ 오프라인 정보센터 설치로 구분할 수 있는 바, 2018년 수행 단체를 공모하여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임.
- 가활센터 조성 타당성 용역 사업은 가활형 발달장애인 전문프로그램 및 전용 도서관 운영 기능과 함께 발달장애인 가활정책 전문연구조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신축 및 기존 센터 통합의 타당성을 조사·연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활센터가 설치될 경우, 기존의 발달장애인 관련 센터(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광역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까지 모색할 계획임.
- 검토하건데, 발달장애인을 더 이상 치료나 재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지적 능력 수준을 인정하면서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가활센터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무엇보다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각종 센터(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사회적응지원센터 등)에 수행하는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재활’이 아닌 ‘가활’의 개념 체득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 실시하고,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며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기존 발달장애인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 및 당사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공감대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바, 일방적인 가활센터 통합 방식은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주요 증감사업

(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은 시설거주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장기간 주거서비스 제공하고 거주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재활 (상담, 치료, 사회적응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 전년 대비 1억 1천 2백만원 증액된 949억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지원을 보면, 민간위탁금항목의 시립시설 1개소(시립 평화로운 집; 46억 6천만원)와 사회복지사업보조항목(897억 7천 6백만원)의 법인시설(44개소)과 개인시설(1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도 2015년 국고전환된 사회복지시설인 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인건비 격차가 상당한 액수로 발생하여 상대적인 사기저하와 이직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집행부는 국고지원시설의 서울시 임금 수준 지원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을 위해 65억 1천 1백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번 예산안에는 일부(27억 9천 4백만원)만 반영되었음.
-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생활시설 운영사업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고환원되지 않은 서울시 기존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11개 유형 990개소)은 시비100%로

수당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국고환원에 따른 인건비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이 1차적이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국고환원으로 인해 바뀌거나 변경된 것이 아닌 만큼, 국고환원을 이유로 운영지원을 축소할 합리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할 것인 바, 이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5년 국고전환된 장애인거주시설,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외 국고지원 생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월250천원~ 월290천원) 또는 처우개선비(월220천원~290천원)를 지속 지원하고 있음.

(2)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구제·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4억 2천 7백만원 증액된 12억 9천 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사업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 ①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6
- ② 규 모 : 3팀(사례지원, 긴급조사 및 솔루션팀, 교육행정팀)9명(센터장 포함)
- ③ 사업기간 : 2019. 1~12월
- ④ 사업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사업 수행
 - 장애인 인권차별의 상담, 사례 관리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 장애인 인권차별관련 조사 및 구제사업

- 장애인 인권센터 예산 편성안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원 수당(2천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정보제공자 보상금도 축소(4백만원; 2명)하여 편성하였음.
- 집행부는 인권침해 의심시설 증가에 따른 원활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조사를 위해서 인권실태 전수조사원 수당이 최소한 전년과 비교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차별행위 정보제공자 보상금의 경우에도 장애인 인권침해 특성상 정보제공 없이 사례확인이 어렵다는 고려하여 정보제공 보상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전년도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조사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일 동안 조사를 해도, 은닉한 인권침해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우며, 이를 감안할 때,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원의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금번 예산안은 이와 같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시급성에 대하여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인권실태 전수조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대부분의 인권침해사건과 사례는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자의 희생적인 각오와 노력에서 출발하여 (인권침해사건이) 시정된 것인 바, 내부 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안에서 삭감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 ※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를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본인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고소·진정 등 적극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함. 대부분의 내부 제보자는 자진퇴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 일부 제보자들은 정서적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진퇴사

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장애인시설의 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폭행, 폭언 및 협박, 금품 강요 등) 사례를 감안할 때, 내부고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보상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사업 수립과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홍보

- 위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도모하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전년과 동일한 9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홍보

- ① 위 치 : 서울시 전역
- ② 규 모 : 공공후견인 활동비 월 1인당 15만원 및 심판청구비용 1인당 50만원 이하 지원
- ③ 사업기간 : 2019.1~12월
- ④ 사업내용 : 공공후견인에 대한 활동비 지원
- ⑤ 총사업비 : 90백만원

- 집행부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과 함께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시설 보호 아동 후견인선임소송을 수행한 바 있음.
- 민법과 관련법(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장이 시설보호아동과 치매노인, 지적

장애인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활용 빈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매 노인과 지적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시설 아동 보호를 위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와 아동 후견인 선임 청구 실시’가 제안된 바 있음.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과 법원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므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지적 장애의 특성상 당사자가 자신 인권 및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 주변의 다양한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 교육 및 실태 조사를 통한 인식개선으로 성년후견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을 위한 교육 홍보비를 확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성년후견제도를 공무원 사회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홍보비 책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및 장애 이동불편 해소를 목표로 하여 2018년 최종예산 5,579억 8천 4백만원에서 11.79% 증액된 6,237억 7천 1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표 44〉 장애인자립지원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8예산(A)	2019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10% 이상)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190,584	217,600	27,016	14.2%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2,157,300	3,295,948	1,138,648	52.8%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8,651,900	11,884,687	3,232,787	37.4%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2,393,809	3,385,364	991,555	41.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223,420,210	258,518,779	35,098,569	15.7%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11,104,920	13,920,000	2,815,080	25.3%
중증장애인연금	119,232,900	135,441,555	16,208,655	13.6%
장애인의료비 지원	5,019,620	6,441,630	1,422,010	28.3%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1,210,842	1,604,430	393,588	32.5%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258,888	334,880	75,992	29.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300,000	2,065,000	765,000	58.8%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300,800	380,000	79,200	26.3%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3,143,657	4,602,852	1,459,195	46.4%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13,400,210	18,402,306	5,002,096	37.3%
□ 주요 삭감(10%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526,087	385,286	△140,801	△26.8%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392,563	111,650	△280,913	△71.6%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315,000	234,000	△81,000	△25.7%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98,800	268,200	△30,600	△10.2%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134,400	120,000	△14,400	△10.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321,923	279,887	△42,036	△13.1%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2,624,015	493,364	△2,130,651	△81.2%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2,372,536	1,805,064	△567,472	△23.9%
□ 주요투자 및 신규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0	3,284,000	3,284,000	신규(국비)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3,624,000	110,000	△3,514,000	△97.0% (투자)

가. 신규 사업

(1)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i) 현황

- 위 신규 사업은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발달)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장애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공공도서관 사서보조, 동료지원 상담가 양성 및 파견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9억 6천백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개요는 다음 표와 같음.

사업개요

- ①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같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 ②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만 18세이상 중증(발달)장애인
- ③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자치구, 장애인단체(복지관 포함)
- ④ 추진방법 : 자치구에 인원 배정, 단체에 위탁수행
- ⑤ 사업의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상담가) 및 발달장애인 공공도서관 사서보조
- ⑥ 소요예산 : 960,124천원

ii)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전반적 문제점

-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지난 '91년 도입되어 28년간 운영되어 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제도 도입 이래로 장애인 일자리는 지속 증가해왔으며, 장애인의 고용률은 OECD 국가와 비교 시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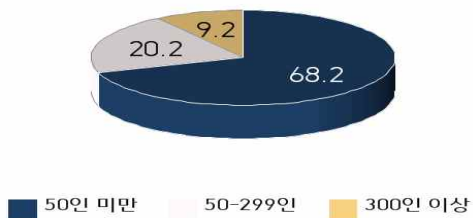
* OECD 평균(15~64세) : 47.6% (우리나라는 15~64세 기준 49.2%)

- 장애인 일자리는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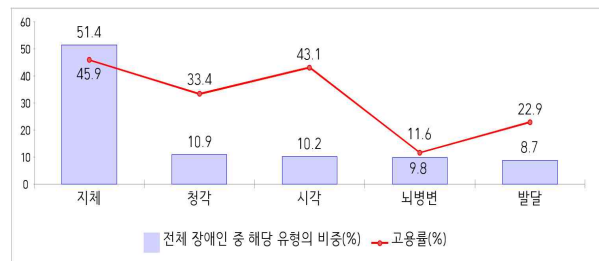
월평균임금도 전체인구의 70% 수준에서 지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전체인구의 두 배 이상이며, 장애유형별로도 고용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장애인구의 90%를 차지하는 5대 장애유형 중에서 지체·시각은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학령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나 뇌병변 장애의 경우 현저히 저조한 상황임.

사업체 규모별 종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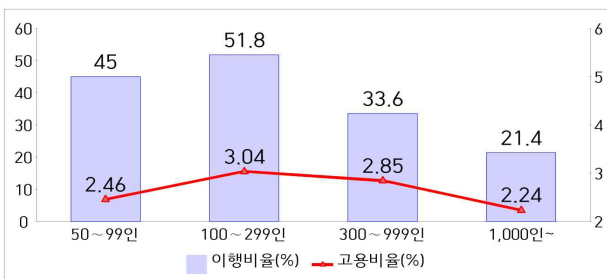
5대 장애유형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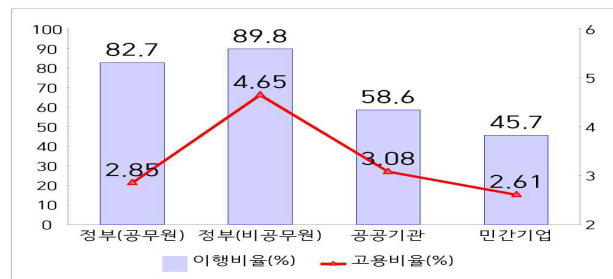
※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17)

- 선도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률도 낮은 상황임.

기업 규모별 의무고용 현황



부문별 의무고용 현황



iii) 검토의견

-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질적인 측면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 최근 과학기술의 고도화, 학령기·구직연령대에서의 발달장애의 증가 등 여건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해당사업이 고용노동부에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는지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음.
- 당 사업을 '19년도에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후 고용노동부사업을 인지하여 국비매칭사업으로 바꾸는 등의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의 태도는 이 사업이 목적인 바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
- 또한, 예산심의 전까지도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서마저 미비한 실정에서 해당사업의 시행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으로 면밀한 사업의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나. 주요 증감사업

(1) 장애인복지관 운영

i) 현황

- 위 사업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재활치료,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활 및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년대비 43억 1천 1백만원 증액된 826억 8천 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업개요는 다음 표와 같음.

사업개요

- ① 지원대상 : 50개소(장애인복지관 49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1개소)
 - 시설수 계 : 50(법인시설 : 24, 시립시설 : 9, 구립시설 : 16, 사회복지관 내 재가복지봉사센터 : 1)
 - 종사자 계 : 1,717 명(법인시설 : 820, 시립시설 : 390, 구립시설 : 504, 사회복지관 내 재가복지봉사센터 : 3)
- ② 사업기간 : '19.1월 ~ 12월
- ③ 사업내용 :
 - 상담, 사례관리 및 사회심리재활사업, 의료재활, 교육재활사업
 - 직업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홍보계몽사업, 평생학습지원사업
 - 정보화제공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

ii) 장애인 복지관 인건비

- 장애인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원이 19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인원제한이 없는 바, 평균 3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집행부는 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를 일정 수준 통제하기 위해 각 장애인 복지관 인건비 총액에 각 직원별 인건비를 평균 5급 10호봉 수준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책정해 왔으며, 개별 장애인복지관의 부족한 인건비는 운영비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왔음.

- 2019년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건비 산출시 2018년도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산출 기준호봉을 5급 11호봉으로 반영하고 시설 조사자 인건비 인상분 2.06%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173억 9천 6백만원 책정함.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만성적으로 인건비 부족 분을 운영비에서 전용해 오고 있음으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운영비 항목을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사업비로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i) 현황

- 위 사업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 제공하기 목적을 가진 바, 전년대비 1천 3백만원이 증액된 73억 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업 개요는 다음 표와 같음.

사업개요

- ① 운영주체 :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소재지 :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30층
- ② 이용대상 : 등록된 청각·언어장애인
- ③ 사업내용 : 출장, 수화교육, 문자, 상담 등
- ④ 수어통역센터 : 26개소 154명
- ⑤ 농아인쉼터 조성 : 5개소 (18년 2개소 설치 예정 : 강동구, 은평구 12월 설치 예정)

ii)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사업의 전반적 문제점

- 집행부는 자치구별 수어통역 수요는 농아인수나 지역특성에 따라 편차가 많으나, 자치구별 수화통역센터 인력은 센터당 5명(센터장 1, 수화통역사 3, 농통역사 1)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수화 통역 수요 등을 반영하여 수요가 많은 자치구에 인력 추가배치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예산의 추가적 편성이 필요함.
- 또한 농아인쉼터 조성사업을 ‘농아인 맞춤형 복지지원 종합대책(시장방침 제 302호, ‘16.10.11)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협소하고 열악한 수화 통역센터 환경개선 및 일반 복지시설 공동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농아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현재 2017년에 5개소를 조성하였고, 2018년 12월(강동구, 은평구)에 2개소 설치만 예정되어 있을 뿐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의 추가 확대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iii) 검토의견

-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야간이나 휴일 긴급 상황 시(병원, 약국 또는 경찰서 방문, 화재 및 교통발생 등) 또는 중요한 법적 문서를 작성하거나 중요 거래를 할 때(부동산 임대차거래 등) 수화통역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지만, 수화통역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불안하다고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청각·언어장애인은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 행동이나 항의성 집회를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여론도 있음.

-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수화통역서비스는 생존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수화통역사 배치와 함께 시설 보강(농아인쉼터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 위 사업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진 바, 전년 대비 2억 8천 1백만원이 감액된 1억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개요는 다음 표와 같음.

사업개요

- ① 이용대상 : 서울특별시내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우선 이용하고 장애인가족, 장애인복지 관련기관·단체·시설 등 시민 이용
- ② 규 모
 - 장애인복지정보제공 1000건, 장애인전화 무지개 CALL 3000건
 - 정보요원단 방문 PC교육 400명, 장애인 정보경연대회 150명
 - 서울재활컨퍼런스 1회, 장애인 심폐소생술교육 100명
 - 장애가정 청소년 생활문화 지원 “두드림 스타”(후원단체 연계 학원비 등 지원)
- ③ 사업기간 : 2019. 1.~12.
- ④ 사업내용 :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및 전문가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바, 종사자 수는 4명(센터장 1, 직원 3)으로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임.

- 종사자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여,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에 준하는 인건비로 조정할 경우 추가로 1천 7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바, 인건비에 관한 적정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종사자 3명의 인건비가 '17년 79,236천원으로 1인당 2천 6백만원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함.

(4)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 운영

i) 현황

- 위 사업은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특수체육 및 심리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사회적응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바, 전년 대비 9백만원 증액된 5억 3천 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개요는 다음 표와 같음.

사업개요

① 시설현황

- 소재지 : 송파구 마천동 28-1 (시립)
- 운영기관 : (사복)한국장로교복지재단
- 종사자수 : 10명
- 개 관 : '05.9월
- 규 모 : 연면적 2,939㎡중 지상3,4층사용
※지하1층~지상2층 굿월스토어 운영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 이용대상 : 정신·발달장애인

② 사업내용

- 지각, 운동능력,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특수체육프로그램
- 사회성 증진 및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 장애아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활동관 운영

-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구)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를 2015년 9월 현재의 센터로 전환한 것인 바, 그 취지는 기존의 어린이와 청소년 발달장애인과 함께 성인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응 통합 프로그램 실시에 있었음.
- 그러나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여 해당 인건비(4명) 충당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으나, 예산상의 한계로 인하여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ii) 검토의견

- 장애아동이 아닌 성인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센터로 발전시킨 취지는 자폐성 및 지적장애인(유아·아동·청장년)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응 특성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집행부가 센터를 통해 방침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고등부 및 성인 이용프로그램 추가 개설 필요하며, 이를 맡을 전문인력 채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하겠음.
- 특히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절벽을 마주하게 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있을 정도로 공공 영역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집행부의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위해서 필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i) 현황

- 위 사업은 차량을 제공하여 시각 장애인 및 신장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전년대비 50억 2백만원이 증액된 184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개요는 다음 표와 같음.

사업개요

- ①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② 이용대상 : 시각장애인1~3급, 신장장애인1~2급
- ③ 위 치 : 동작구 상도로 216 인경빌딩 3,4층(차고지 서울시내 9개소)
- ④ 규 모 : 연 면 적 : 339.82㎡, 지상 3, 4층 임차사용
- ⑤ 사업내용 :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병원 및 외출, 여가 생활 서비스 제공
- ⑥ 사업기간 : 2018.1.1~12.31

- 집행부는 장애인(시각·신장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바우처 택시사업(13억 2천만원)과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지원을 병행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운전자의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음.

※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우처택시를 도입한 2018년 콜처리율은 77.2%(2분기)로 전년 동기(57.7%) 대비 20%p 향상되었으며, 바우처택시의 콜처리 비중은 9.2%(18년 1분기)에서 14.6%(18년 3분기)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함.

- 다만, 집행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내구연한 9년이 지나고 주행거리 12만km이상인 노후차량 32대에 대해 교체를 계획하여 관련 예산을 추계(658백만원)하여 예산 편성함.

ii) 검토의견

- 바우처 택시제도 도입한 이후에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의 콜처리율이 상당 폭 증가한 바, 이에 따라 수요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음. 장애인(시각과 신장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 서비스는 공공영역이 맡아야 할 중요한 업무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시장경제(바우처 제도 등)에 맡길 수 없는 성질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장애인의 안전문제는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준수해야 할 제 1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노후차량 교체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은 원칙에 맞게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 양육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돌보미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30% 시비 70% 국비매칭 사업임. 따라서 국비 내시액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예산 집행 정산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89%, 2017년은 92.4%, 2018년 10월 기준 83.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46>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연도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15년	1,421,809	1,421,809	0	100
2016년	1,633,109	1,454,187	178,922	89.0
2017년	1,701,971	1,571,817	130,154	92.4
2018년 10월말	2,157,300	1,804,845	352,455	83.7

※ 2018년 집행액은 교부액 기준임

- 2017년과 2018년 추진 실적을 비교해 보면 돌보미 활동 및 연계실적이 전년도 수준에서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고, 2019년도에도 특별한 증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비가 7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이 국비 내시에 따라 1,139백만원(52%) 증액된 3,296백만원으로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재정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는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에도 정확한 수요 예측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표 47>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실인원/연인원)

구 분	돌보미 활동현황		연계가정	연계건수
	돌보미	활동시간		
2017년	284/2,052	139,639	399/2,843	39,077
2018년 10월말	241/1,434	99,765	367/2,157	27,620

7) 자활지원과

- 자활지원과는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와 노숙인 보호 및 자활 지원, 자활지원 사업 내실화로 자립능력 제고 등을 목표로 하여 2018년 최종예산 1,335억 1천만원에서 46.24% 증액된 1,952억 4천 1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표 48〉 자활지원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8예산(A)	2019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10% 이상)				
노숙인 등 일자리지원	9,152,790	10,320,112	1,167,322	12.8%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1,389,008	2,233,406	844,398	60.8%
자활근로사업 지원	51,552,717	113,572,305	62,019,588	120.3%
청년희망키움통장	2,097,118	2,455,200	358,082	17.1%
□ 주요 삭감(10% 이상)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7,044,843	2,067,453	△4,977,390	△70.7%
노숙인 등 의료지원	6,864,905	4,843,704	△2,021,201	△29.4%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비)	1,164,995	874,916	△290,079	△24.9%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709,750	253,924	△455,826	△64.2%
희망키움통장 I	2,959,650	2,362,500	△597,150	△20.2%
희망키움통장 II	8,111,708	7,036,940	△1,074,768	△13.2%
내일키움통장	674,356	554,796	△119,560	△17.7%
□ 주요투자 및 신규사업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0	521,325	521,325	신규(국비)
자활장려금	0	9,261,923	9,261,923	신규(국비)

-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29.4%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청년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I·II는 정부매칭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가내 시분을 반영할 결과임.

가. 주요 증감사업

(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

i) 현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25개구 30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3억 9천 6백만원 증액된 71억 5천 7백만원을 예산 편성함
- '19년도 지역자활센터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국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396백만원 증액) 66억 8천 6백만원 및 종사자 복지수당 4억 2천 6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단가 상승분(10호봉 미만 200천원, 10호봉 이상 260천원)을 반영하였음.

ii)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문제점

-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임금표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임금표의 적용을 받는 바, 서울시 사회복지 임금표를 적용받는 시설에 비해 종사자 임금의 87% 수준의 임금을 받음.
-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임금표의 적용을 받으나 서울시가 국비시설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우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iii) 검토의견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고부담 증액 또는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제로 통합운영을 통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273명)

의 처우개선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 자활사업(일자리) 환경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더 시급을 요하는 문제는 '18년도까지 지급되던 4만원의 수당을 집행부가 '19년도에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한 지역자활센터종사자의 임금이 감액되는 등의 사기저하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음.

IV. 기금운용 계획안

- 복지본부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이 있으며, 개별 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어야 함.
- 기금은 그 성격상 안정된 사업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기금사업이 일반 예산 사업과 비교할 때 차별성이 미흡하고, 의회 예산안 심의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 방식보다는 일반회계 예산 항목을 통해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하겠음.

<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기금조성 계획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8년말 조성액 ①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말 조성액 ⑤ = ① + ④
			수입 ②	지출 ③	증감 ④ = ② - ③	
총 계		318,144	5,339	12,167	△6,828	312,317
사 회 복 기 금	소 계	42,834	3,042	4,842	△1,800	42,034
	노인복지계정	13,425	323	974	△651	12,774
	장애인복지계정	22,657	2,074	3,025	△951	22,706
	자활계정	6,752	645	843	△198	6,554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5,310	2,297	7,325	△5,027	270,283

※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지출액은 융자성·비용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3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천 8백만원이 증액(65.6%) 되었음.
-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천 5백만원, 기타수입 9천 8백만원임(전년대비 증 9천8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1,748,007	2,109,316	△361,309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1,000,000	△1,000,000
예치금회수	1,425,202	914,316	510,886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224,846	195,000	29,846
기타수입	97,959	0	97,959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천 5백만원, 기타수입 9천 8백만원임 (전년대비 증 9천8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지출계획 >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748,007	2,109,316	△361,309
비용자성사업비	820,835	795,266	25,569
용자성사업비	150,000	100,000	50,000
기본경비	3,000	3,00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774,172	1,221,050	△436,878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20억 7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원이 감액(1.0%) 되었음.
-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용자금회수수입 재투기금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1천 8백만원(전년대비 △2천만원)임.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11,330,897	12,281,906	△951,009
용자금회수(이자포함)	1,656,000	1,656,00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9,256,906	10,187,959	△931,053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417,991	437,947	△19,956
기타수입	0	0	0

- 지출계획 편성안은 30억 2천 5백만원으로 비용자성 사업비 7억원, 용자성

사업비 23억원, 기금관리비 2천 5백만원임.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지출계획 >

(단위:천원)

항 목	지 출 계 획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1,330,897	12,281,906	△951,009
비용자성사업비	700,000	700,000	0
용자성사업비	2,300,000	2,300,000	0
기본경비	25,000	25,00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8,305,897	9,256,906	△951,009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6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천 6백만원이 증액(61.7%) 되었음.
-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금회수수입 5억 2천 4백만원(전년대비 증 2억 3천 7백만원), 재투기금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천 1백만원(전년대비 증 9백만원) 등임.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2,976,989	2,246,339	730,65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523,913	287,180	236,733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2,331,686	1,847,051	484,635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121,390	112,108	9,282
기타수입	0	0	0

- 지출계획 편성안은 8억 4천 3백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억 3천 8백만(전년대비 △2억3천9백만원), 융자성 사업비 2억원(전년대비 △1억원), 기금관리비 5백만원임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지출계획 >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2,976,989	2,246,339	730,650
비융자성사업비	638,015	877,480	△239,465
융자성사업비	200,000	300,000	△100,000
기본경비	5,000	5,00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2,133,974	1,063,859	1,070,115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22억 9천 7백만원으로 전년 동일함.
-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9천 2백만원, 기타수입 5백만원임.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항 목	수 입 계 획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244,267,918	210,022,999	34,244,919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예탁금원금회수	33,330,000	33,330,000	0
예치금회수	208,640,468	174,395,549	34,244,919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2,292,450	2,292,450	0
기타수입	5,000	5,000	0

- 지출계획 편성안은 73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4억 5천 3백만원 증액되었음(무더위 쉼터 냉방비 54억원 증액 등)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지출계획 >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244,267,918	210,022,999	34,244,919
비용자성사업비	7,324,567	1,871,610	5,452,957
용자성사업비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236,943,351	208,151,389	28,791,962

- 기금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바, 소관 일부 기금(계정)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보다는 현재액과 예치금 등으로 쏠림 현상을 보여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

- 노인복지계정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은 전년도에 비해 8.5%가 증가한 반면, 예치금은 36.6% 감소하여,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 비중 쏠림 현상을 완화한 것으로 보임

〈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적립금	적립금 총계	15,000	14,503	13,914	13,425	12,774	
	적립금 총계 증가율	0%	△3.3%	△4.1%	△3.5%	△4.8%	
수입	합계	증감	518	△744	441	361	△361
		전년대비증가율	25%	△36%	33.8%	20.7%	△17.1%
	출연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	0%	0%	0%	0%
지출	합계	증감	518	△744	441	361	△361
		전년대비증가율	33.8%	△36%	33.8%	20.7%	△17.1%
	지출액	금액	2,050	1,306	1,748	2,109	1,748
		전년대비증가율	33.8%	△36%	33.8%	20.7%	△17.1%
수지 총괄 비교	고유목적 사업비	증감	△94	△69	△41	△51	76
		전년대비증가율	△9%	△7%	△4.8%	△6.3%	8.5%
	예치금	증감	622	△674	483	311	447
		전년대비증가율	123%	△60%	106.9%	33.3%	△36.6%
	예탁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	0%	0%	0%	0%

- 장애인복지계정의 경우, 2019년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 동일하고, 예치금은 10.3% 감소하였음.

〈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적립금	적립금 총계	23,310	24,961	24,588	23,657	22,706	
	적립금 총계 증가율	12.6%	7.1%	△1.5%	△2.8%	△4.0%	
수입	합계	증감	710	△1,979	△710	867	△951
		전년대비증가율	16.1%	△38.6%	△5.9%	7.6%	△7.7%
	출연금	증감	0	△2,00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	△100%	0%	0%	0%
지출	합계	증감	△661	198	△710	867	△951
		전년대비증가율	△20.7%	7.8%	△5.9%	7.6%	△7.7%
	지출액	금액	2,527	2,725	11,415	12,282	11,331
		전년대비증가율	△20.7%	7.8%	△5.9%	5.5%	△7.7%
수지총괄비교	고유목적사업비	증감	△657	186	1,000	△700	0
		전년대비증가율	△20.7%	7.4%	50.0%	△18.9%	0%
	예치금	증감	2,106	429	△1,700	△931	△951
		전년대비증가율	30.9%	4.8%	△18.1%	△9.1%	△10.3%
	예탁금	증감	50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3.6%	0%	0%	0%	0%

- 자활계정은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28.8%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100.6% 증가하였음.

〈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적립금	적립금 총계	11,582	11,070	6,267	5,484	6,554	
	적립금 총계 증가율	0%	△4.4%	△43.4%	△12.5%	△19.5%	
수입	합계	증감	628	937	4,724	△5,529	731
		전년대비증가율	42.2%	44.3%	154.8%	△71.1%	32.5%
	출연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	0%	0%	0%	0%
지출	합계	증감	628	937	4,724	△5,529	731
		전년대비증가율	42.2%	44.3%	154.8%	△71.1%	32.5%
	지출액	금액	2,114	3,051	7,775	2,246	2,977
		전년대비증가율	42.2%	44.3%	154.8%	△71.1%	32.5%
수지총 괄비교	고유목적 사업비	증감	△113	226	5,187	△5,097	△339
		전년대비증가율	△11.5%	26.1%	476.7%	△81.2%	△28.8%
	예치금	증감	740	711	△493	△401	1,070
		전년대비증가율	146.2%	57.0%	△25.2%	△27.4%	100.6%
	예탁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	0%	0%	0%	0%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가 2019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91.2%가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13.8% 증가하였음.

〈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적립금	적립금 총계	272,007	275,920	277,226	275,310	270,283	
	적립금 총계 증가율	2.0%	1.4%	0.5%	△0.6%	△1.8%	
수입	합계	증감	27,937	△134,869	160,601	30,657	34,245
		전년대비증가율	22.2%	△87.8%	855.8%	17.1%	16.3%
	출연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	0%	0%	0%	0%
지출	합계	증감	27,937	△134,869	160,601	30,657	34,245
		전년대비증가율	22.2%	△87.8%	855.8%	17.1%	16.3%
	지출액	금액	153,634	18,765	179,366	210,023	244,268
		전년대비증가율	22.2%	△87.8%	855.9%	17.1%	16.3%
수지총 괄비교	고유목적사 업비	증감	△30	755	35	816	5,453
		전년대비증가율	△7.6%	206.3%	3.4%	77.3%	291.2%
	예치금	증감	1,667	15,376	160,566	29,841	28,792
		전년대비증가율	277.4%	678.0%	904.9%	16.7%	13.8%
	예탁금	증감	26,300	△151,000	149,740	△126,410	0
		전년대비증가율	21.1%	△100%	1,497%	△79.1%	0%

- 복지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시민 삶을 지키는 서울형 미래복지모델 구현 및 좋은돌봄·좋은일자리 사업예산 등을 예산안 편성 반영하여 '18년도 대비 16.4% 증액분을 반영한 예산임.
- 2019회계연도 복지본부 예산안을 정책별로 구분하면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3.89%,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정책사업 36.1%,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 맞춤형 복지실현 정책사업 37.57%, 50+세대의 일자리 지원기반 마련 및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에 5.02%,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로 실질적 자립도모 정책사업 14.18%,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사업 3.24% 등 증가되어 편성하였음.
- 그러나 제출된 안건 중 돌봄특별시를 표방하며 추진 할 '돌봄 SOS센터'의 경우 기존의 다산콜센터 및 120재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통합돌봄지원전달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운영 중인 찾동플래너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자의 업무간 연계 내지 협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공공의 인력을 늘여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것보다는 기존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의 규모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사업 운영근거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좋은돌봄·좋은일자리를 위한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치' 예산안의 경우,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설립의 타당성은 인정되어지나, '

19년도 시행될 시범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울사회서비스원’이라는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될 계획이므로 시범사업의 성격 상 조직규모 및 인력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 또한, ‘서울사회서비스원’ 예산안 중 서비스 개발(4억 6천 9백만원)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 체계 구축 사업(2억 3천만원)과 중복되므로 해당 예산의 반영은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산하기관 설치 및 관리(19억 1천 3백만원)항목으로 산정한 예산의 경우 ‘19년도에 운영될 사업은 시범사업이며 그 규모도 축소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향후 방향과 규모를 예상하기에 바람직하므로 해당 예산에 대한 축소 심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아울러 예비비(10억원)에 대한 예산 산정의 구체적 산출근거도 없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 복지본부 산하의 재단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의 ‘19년 예산은 전년대비 28.34% 증액되어 편성되었는 바, 복지재단의 경우 출자출현기관으로 설립된 후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울시 복지시정에 여러 역할을 한 것은 인정되나 공조직 체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 업무와 전문적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고,
- 현재 서울시 복지업무의 상당 부분이 복지재단에 위임 되어 있으므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조직진단 및 인력 재편성, 사업의 재정비 등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사료되어짐.
- 따라서, 금번 ‘서울복지재단’의 예산안에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함.

- 국비매칭 사업의 경우, 예산의 특성상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으나 이를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 태도가 요망되며, 금번처럼 과다 추계를 할 경우 필요한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삭감되는 등 복지사업의 시급성 및 과학적인 필요예산추계 등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국비매칭사업의 경우 사업량 및 예산 추계와 관련한 사전 매칭비율 확정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금번에 제출된 복지본부 소관 사업들은 돌봄을 매개로 하여 사업 수혜대상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 그 긴급성과 시급성은 인정되어지나, 수혜 대상자가 사업운영에 있어서 불모가 아니며 공공서비스는 공조직 체계에서 권한과 책임이 필요한 업무 영역이고 서울시가 복지예산 및 복지업무를 상당 부분 위임하는 것은 ‘민간으로의 책임 회피’라는 태만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하고 복지본부 내 조직진단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 보강 등의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되어지며 관련 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복지본부 내 잦은 인사이동은 복지업무의 차질을 초래하고 이는 시민에게 부정적 결과가 돌아가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타 부처에 비해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기피부서가 되지 않기 위한 인사시에 가산점 부여 등의 서울시 차원 복지 공무부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복지본부는 예산수립 시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하고 촘촘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연례적·반복적인 불용액 발생 및 수혜대상자에게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과 관련한 누락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기회비용

또는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관련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1	복지본부 일자리 및 돌봄 사업 목록
---------------	----------------------------

□ 복지본부 돌봄 관련 사업 목록(시행중)

(단위 : 천원)

부서	사업	세부사업	2017	2018
희망복지지원과	계		2,506,635,625	2,798,601,495
	정책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1,961,602,855	2,172,870,461
	단위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116,067,551	139,967,690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1,873,716

어르신복지지원과	계		1,854,116,801	2,261,086,771
	정책	어르신복지 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1,850,405,544	2,261,034,925
	단위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218,377,926	233,742,491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3,462,000	3,595,826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시비)	2,837,448	3,038,100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기본	10,798,176	14,646,210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종합	7,381,500	8,302,500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단기	176,061	99,000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사회관계활성화	502,500	739,500

인생이	계		247,931,610	302,005,385
	정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242,189,422	301,968,336

부서	사업		세부사업	2017	2018
모작지원과	책				
	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154,292,534	44,174,829
		보람일자리 사업		8,906,000	10,916,000
위		우리동네 돌봄단 등		500,000	

장애인복지정책과	계			209,193,552	229,677,039
	정책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206,946,757	229,622,217
	단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49,024,149	165,625,68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9,581,762	10,303,263
		긴급돌봄 최종증 운영심사		3,000	

장애일자립지원과	계			557,983,761	623,770,729
	정책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556,201,586	623,726,656
	단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525,170,351	596,117,072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활동지원급여		223,420,210	258,518,779
			고령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원		1,097,52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300,000	2,065,000
		장애인가족 긴급 돌봄서비스		320,000	

□ 복지본부 일자리 관련 사업 목록(시행중)

부서	사업		2017	2018	증가율
인생이모작지원과	계		247,931,610	302,005,385	22
	정책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242,189,422	301,968,336	25
	단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12,115,559	158,309,982	41
		보람일자리 사업	8,906,000	10,916,000	23
		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3,620,000	4,436,700	23
	위	경로당 길라잡이 일자리 사업(시민참여)		193,200	100
		경로당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복지(시민참여)		4,800	100

장애인지정정책과	계		209,193,552	229,677,039	10
	정책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206,946,757	229,622,217	11
	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4,277,268	35,952,681	5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720,503	1,755,010	2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717,210	1,748,528	2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 일자리	1,584,065	2,079,705	31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2,913,768	3,971,277	36
	위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9,847,881	12,535,852	27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185,926	517,851	179

부서	사업		2017	2018	증가율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960,124	100

자 활 지 원 과	계		133,509,969	195,241,166	46
	정책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56,592,839	56,592,839	0
	단위	노숙인 등 일자리지원	9,152,790	10,320,112	13